

朝鮮王朝의 神殿 宗廟

李 康 根*

차 례

I. 머리말	1. 王位繼承
II. 神主奉安의 理論과 實際	2. 神主奉安 現況과 歷史의 過程
1. 家禮와 國朝五禮儀	3. 神主奉安과 宗廟建築의 變遷
2. 神主奉安의 原則과 現實	IV. 宗廟建築의 力動的 아름다움
III. 朝鮮王朝의 王位繼承과 神主奉安	V. 맺음말

I. 머리말

宗廟에 대한 관심은 비단 건축 분야에서만 있어 온 것이 아니다. 조선초기 儒敎儀禮의 제도적 확립과 실천 과정을 살핀 논고나¹⁾, 王位繼承의 正統性에 관한 논쟁, 이른바 禮論을 政爭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논고 등은 종묘에 대한 역사학계의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성과로 보인다²⁾. 즉 思想史나 政治史의 관점에서 밀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宗廟祭禮와 祭禮樂을 통하여 禮樂思想과 음악 창작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연구가 국악계에서 이루어져 왔다.³⁾

宗廟建築은 宗法이 왕위계승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지 그 軌跡을 보여주는 視覺的 象徴이다. 왜냐하면 廟制와 神主奉安 原則으로 대표되는 禮制가 현실 정치권력인 王權에 의하여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지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王權

* 경주대학교 교수

1) 池斗煥, 「朝鮮初期 國家儀禮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李範稷, 「朝鮮初期의 五禮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4 ; 李迎春, 「哲宗 初의 辛亥祧遷禮訟」, 『朝鮮時代史學報』, 1997. 4, 209~252쪽.

3) 권오성 외, 「한국의 종교음악」, 『한국의 종교문화와 예술』, 문화부, 1991.

과 臣權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附廟 과정에서 부단한 논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世室의 증가에 따른 종묘의 增建과 祧遷된 신주의 증가로 인한 영녕전의 증건이 계속되어 마침내는 莊嚴한 神殿으로 발전되었고, 그 결과 종묘건축은 조선왕조 최대의 紀念碑的 건축이 되었다(圖 1, 圖 2).

건축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한 복원적 연구가 선행되었고⁴⁾, 뒤이어 유교의 魂魄 개념을 토대로 정신사적 해명을 시도한 논고가 발표되었으며⁵⁾ 최근에는 종법에 대한 이해를 준거로 하여 삼국시대 이래 한국 종묘건축의 전통 위에서 조선왕조 종묘건축의 原形을 밝히면서 중국 종묘건축과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도 나왔다⁶⁾.

종묘건축의 樣式에 대해서는 復原的 연구에서 지적인 대로, 종묘는 제1실부터 제11실까지는 17세기초. 광해군 재건때의 양식, 제12실부터 제19실까지는 이를 모방한 복고 양식으로 보이며, 영녕전은 1667년(현종 8)에 전면적으로 改修된 건물이므로 17세기 중반의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그러나 宗廟建築의 本質은 樣式보다는 역시 묘제와 신주봉안의 실천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增建 과정을 고찰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종묘건축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최종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禮制와 行用, 理論과 實踐의 관계에 주목하여, 묘제와 신주봉안의 원칙이 附廟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현종대에 완성된 뒤 변화를 겪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현존 종묘건축의 미적 구성원리를 밝히기 위하여 '建築形態의 重層的 展開'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보았다⁸⁾. 이를 통하여 종묘건축이 祭享儀禮의 진행과 관련하여 力動的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설계·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⁹⁾.

4) 金東旭, 「宗廟建築의 復元的 研究」, 『경기대학교논문집』 제20집, 1987; 김동욱, 「朝鮮時代 宗廟 正殿 및 永寧殿의 건물 규모의 변천」, 『문화재』 21호, 1989; 『宗廟 正殿 實測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89. 9.

5) 李鏡美, 「宗廟建築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6) 韓志晚, 「史的 考察을 통하여 본 宗廟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7) 일반적으로 왕실 사당의 시설 전체를 '宗廟', 태조 이하 순종까지 19위를 모신 사당을 '宗廟 正殿'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문헌사료에 입각하여 전체를 지칭할 때는 宗廟建築, 19위를 모신 사당을 가리킬 때는 '宗廟'로 구별하였다. 한편, 종묘건축에 대한 양식적 고찰은 같은 시기 익공식 건물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金光鉉, 「建築形態의 重層的 展開에 關する 研究」, 日本: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82. 참조.

9)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해 11월 8일에 있었던 한국미술사학회 주최의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특별 학술발표회에서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글은 그 논문의 논지를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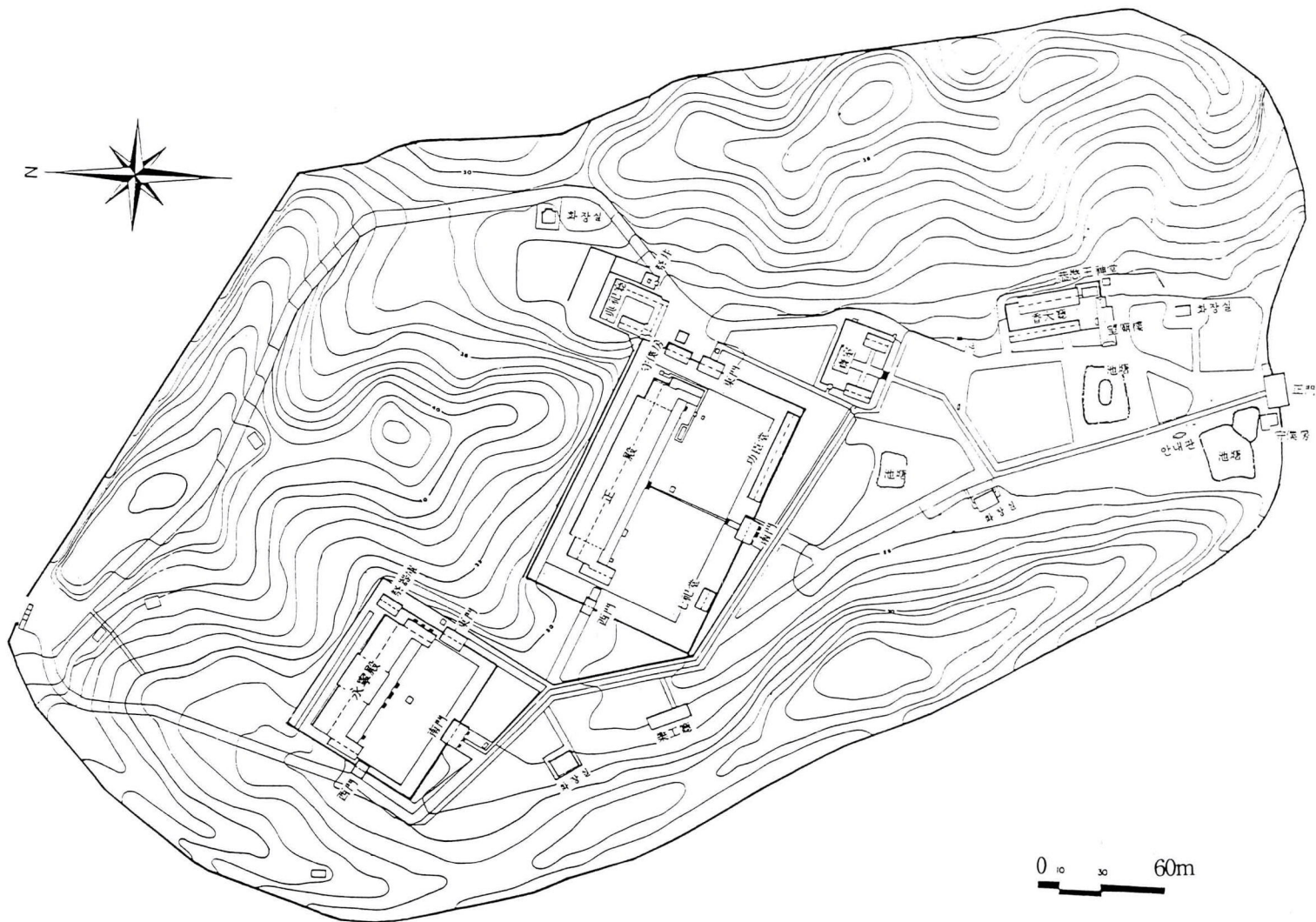


圖 1. 宗廟建築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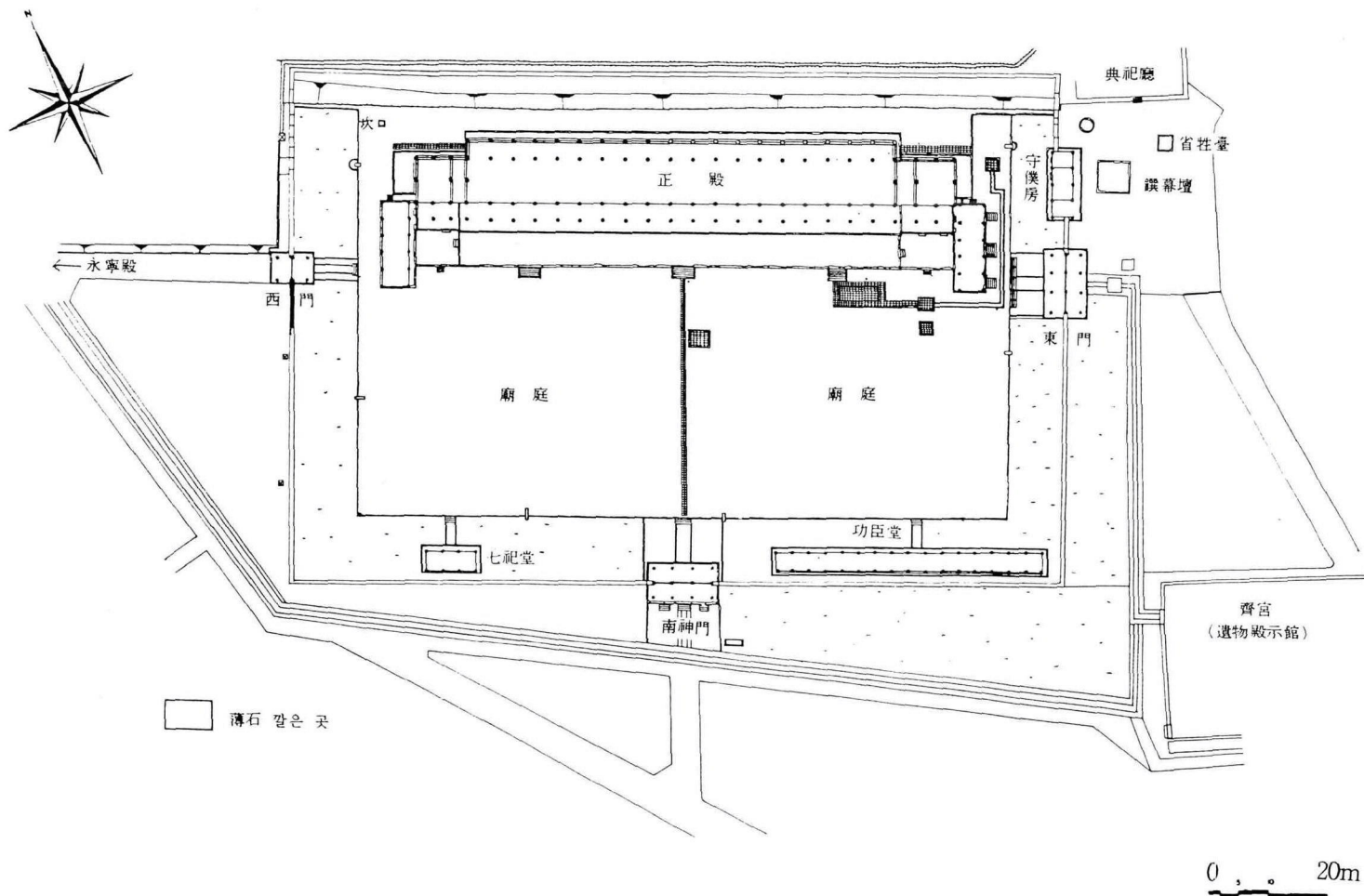


圖 2. 宗廟 配置圖

II. 神主奉安의 理論과 實際

1. 家禮와 國朝五禮儀

廟는 子孫이 祖上의 神主를 모시고 祭享을 지내는 특정 장소이자 특수한 형식을 갖춘 건축이다. 신주를 모신 祠堂에 정성스레 祭床을 차려 놓고 자손들이 제향 의례를 행하면 先祖의 영혼이 돌아와 신주에 깃들어 歆饗을 하고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는 독특한 믿음의 소산이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靈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魄만 지상에 남게 된다고 여기는 독특한 전통적 死生觀 때문에 魄은 무덤에 묻어 葬禮를 치르고 魂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신주가 모셔진 사당으로 돌아와 깃들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그래서 유교의 예법에서도 무덤 제사뿐 아니라 사당 제사를 자손들이 한데 모여 성대하게 치르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殯所에 죽은 이의 屍身을 모셔 놓고 殮을 한 다음 弔問을 받고 喪禮를 치르고 나면, 魄을 묘에 묻는 葬事 儀禮가 뒤따르고, 장례가 끝나면 假神主를 만들어 喪廳에 모셔놓고 만 2년 동안 살아계실 때처럼 정성껏 모신다. 이렇게 三年喪이 끝나면 좋은 날을 택하여 가신주는 무덤가 깨끗한 땅에 묻고 사당에는 새로 만든 신주를 모신다. 사당에 모셔진 신주는 자손들로부터 오랜 동안 제향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禮法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 士大夫의 예법을 규정한 '家禮'에서는 제향드릴 수 있는 조상의 代數를 4대 즉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이를 四親이라 함)까지로 제한하고 親盡한(대수가 찬) 5代祖의 신주는 사당 밖 깨끗한 곳이나 무덤 주위에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당에 모셔지는 분들은 宗法上 한 家門의 직계 자손 즉 宗子·宗孫이어야 하며 宗統의 始祖는 영원히 사당에서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不遷位로 삼았다.

사당의 형식에는 神主를 모신 神室을 각각 독립된 한 채의 건물로 지은 형식(同堂同室制)과 여러 실을 모두 한 채의 건물에 갖춘 형식(同堂異室制) 등 두 가지가 있다. 同堂同室制는 중국 周代의 예법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漢代 이후에는 同堂異室制가 널리 채택되었고, 일찍부터 중국의 문물제도와 예법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후자를 따랐다.

宗廟는 王朝의 주인이 된 王室 宗家の 家廟이다. 帝王家の 예법은 士大夫家の 예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종묘건축도 가묘건축을 기본 형식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태조 이하 4대를 모실 수 있도록 오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국의 황제는 6대까지 제사드릴 수 있다는 이른바 '天子七廟 諸侯五廟'라는 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는 '五廟制'를 채택하였으므로

時王의 四親과 始祖를 함께 모신 사당 즉 五廟를 종묘건축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런데 宗統은 直系 子孫만이 계승하였으므로 당연히 直系 祖上만이 家廟에 正位로 봉안되어 제사를 흥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실 사당인 종묘에 정위로 봉안되는 대상도 王統을 계승한 직계 자손이어야 마땅하였고, 종법상 하자가 없는 嫡長子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만 正統性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王位繼承의 과정은 한 가문에서 종통을 이어나가는 과정과는 사뭇 달랐다. 여러 왕조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兄弟에 의한 왕위계승만 하더라도 王室의 宗統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쟁을 유발하곤 하였다¹⁰⁾.

종묘에 선왕의 신주를 봉안할 때쯤이면 여지없이 종법상의 하자가 검토되고, 이에 발맞추어 神室에 神主를 봉안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직계에 의한 왕위 계승의 경우는 父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주마다 방 1칸에 따로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형제가 계승한 경우에는 형제의 신주를 한 방에 함께 모실 것(合祔)인지 아니면 따로 각 방에 모실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합부할 경우에는 신실을 늘려 짓지 않더라도 묘제와 예법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時王은 人情을 내세워 합부를 채택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에서는 형제가 계승한 경우에 형제의 신주를 한 방에 함께 모신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¹¹⁾. 형제의 신주를 각 방에 모시게 되자 신실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결과 신실의 수를 5칸으로 제한한 오묘제는 더 이상 고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실의 增建이 불가피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형제계승시 신주를 각 방에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國朝五禮儀』에 규정하였고 역대 왕들은 이를 典範으로 삼았으므로, 형제계승이 거듭되자 계속해서 증건될 수밖에 없었다¹²⁾. 물론 예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혈연적으로는 형제 사이라 하더라도 왕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의리상·명분상 君臣關係, 父子關係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따라 신주봉안의 원칙을 정하면 親盡되지도 않은 신주를 사당 밖으로 옮겨내야 하는 무리가 발생하나, 이는 王室의 특수성으로 이해하면 되며 家禮와 王家禮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물론 위 두 주장 사이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고 조선후기에는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가 많았다¹³⁾.

한편 親盡된 신주를 땅에 묻기에 미안하다는 이유로 왕가에서는 특례로 別廟를 짓고 祧遷

10)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연구」, 38~40쪽.

11) 定宗과 太宗, 仁宗과 明宗, 景宗과 英祖 등이 형제에 의한 왕위계승의 실례이다. 追崇된 경우에도 형제의 신주는 각 방에 모셔졌으니 德宗과 睿宗, 眞宗과 莊祖 등의 예가 그것이다. 또 世祖처럼 篡位한 경우 형제인 文宗과 세조의 신주도 각 방에 나란히 모셔졌다. 한편 中宗처럼 反正으로 등극한 경우 형제간의 계승 일지라도 전왕인 연산군이 폐위되어 종묘에 모셔지지 않았으므로 신주 봉안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12) 이 글 제3장 제3절 明宗代의 增建 참조.

13) 李迎春, 앞 글 참조.

하여 영원히 제향하는 길이 모색되었다. 조선왕조에서도 世宗이 별묘인 영녕전을 세워 追尊된 四祖의 신주를 移奉하도록 마련하였고, 이후 친진된 신주를 종묘의 곁방에 차례로 옮겨 봉안 하였으므로 그결과 영녕전은 祧廟가 되었다.

2. 神主奉安의 原則과 現實

조선왕조에서는 王과 王妃 또는 왕실 어른이 죽으면 國葬都監, 殯殿·魂殿都監, 山陵都監 등을 설치하여 喪葬禮 일체를 거행하였으며, 국장이 끝나면 虞主(假神主)를 만들어 魂殿에 모셔 놓고 三年喪을 치렀다¹⁴⁾. 만 2년만에 居喪을 마치면 혼전에 모셔져 있던 가신주는 꺼내어 종묘터에 埋安하고, 새로 만든 신주를 吉日을 택하여 종묘에 모셨는데 이를 祔廟 혹은 陞祔라고 한다. 조선왕조 역대 왕의 신주는 폐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묘에 부묘되었다가 親盡 이후에 비로소 영녕전으로 祧遷되었다.

왕위에 오른 적이 없으나 追崇 혹은 追尊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 높여진 경우(四祖·德宗·元宗·眞宗·莊祖 등)에도 그 신주는 종묘에 승부되었다가 친진 이후에 영녕전으로 초천되는 것이 상례였다¹⁵⁾. 다만 端宗은 숙종 때에야 復位되었으므로 종묘에 승부할 경우 친진이 이미 넘었으므로 처음부터 영녕전 협실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¹⁶⁾.

親盡이 되어 祧遷해야 할 신주를 不遷位로 정하여 그 신실을 世室로 삼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예법을 무시하면서 아직 친진이 되지도 않은 신주를 미리 불천위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¹⁷⁾. 세실의 숫자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신실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물의 增建이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종묘의 원천적인 증건 요인은 세실과 형제소목법을 채택한 데 있었다. 祧廟인 영녕전도 계속해서 초천되어 오는 신주를 봉안하기 위하여 중앙의 四祖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곁방을 계속 증건해 나가야 했다.

-
- 14) 혼전에서 小祥祭(忌日로부터 한 돌만에 지내는 제사)와 大祥祭(기일로부터 두 돌만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만 2년 동안의 喪이 끝나면 禫祭를 지낸 다음 喪服을 벗게 된다. 祔廟는 담제 직후에 시행된다.
- 15) 추존된 四祖도 後王에 의하여 遞遷되어 四祖殿에 모셔졌는데 이는 후대의 祧遷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세종이 창건한 別廟는 四祖殿이지 祧廟가 아니라는 주장이 실록 기사의 여러 곳에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조묘나 다를 바가 없었다.
- 16) 端宗의 復位 과정은 『宗廟儀軌』(肅宗 30年刊)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宗廟儀軌』의 편찬은 定宗의 廟號를 새로 정하고 端宗의 復位를 실천했으며 宣祖·仁祖·孝宗 등을 世室로 삼았던 肅宗에 의하여 시도된 것이었다.
- 17) 太祖는 조선왕조를 건국한 始祖로서 예법상 百世不遷之主 즉 不遷位로 정해져 있었다. 태종 이하 불천위로 정해진 14개 신주는 태종처럼 친진이 다한 시점(연산군 1년 10월 2일)에서 불천위로 정해진 경우와 世祖처럼 친진이 되기도 전에 불천위로 정해진 경우로 구분된다.

종묘의 제향 의례 가운데 祔廟禮야말로 왕실 최대의 경축 행사였다. 時王이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한 지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년상을 마치고 행하는 의례였기 때문이다. 그리하기에 祔廟禮는 가장 성대한 吉禮로 인식되었다. 종묘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제향 의례 가운데 가장 성대한 의례가 祔廟儀禮였다는 점은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¹⁸⁾. 부모일 하루 전에 시왕은 御齋室에 나가 齋戒하고 丑時(새벽 1시부터 3시)에 선왕의 신주를 새로운 신실에 봉안하였다. 친진된 신주는 부모일 하루 전에 영녕전으로 조천하고 증조 이하의 신주는 모두 서쪽 신실로 이동시켜 새로운 신주를 봉안할 방을 동쪽 방에 확보해 놓고 부모의례를 奉行하는 것이 의례의 모든 과정이었다¹⁹⁾. 이때 이안하거나 조천할 신주가 있으면 移安禮나 祧遷禮를 행하였다²⁰⁾.

그런데 부모가 행해지는 시점은 時王이 즉위한 지 만 2년밖에 되지 않은 때이고 喪服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특수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즉 大妃나 大王大妃의 간섭이 많이 작용하는 때이며, 부모 과정에 예법이나 의리보다는 인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릴 소지가 많은 때이다. 또 외척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부모를 앞둔 시점에서는 늘 禮論에 밝은 관료나 儒臣들이 왕실의 宗統이나 묘제에 대하여 시왕의 입장을 옹호하게 마련인 勳戚들과 논쟁을 전개하는 일이 많았다.

時王의 부모로서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生父와 生母는 당연히 종묘에 신주를 모셔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成宗은 생부를 왕으로 추존하고 끝내는 德宗이라는 묘호까지 마련하여 叔父인 睿宗의 신실 위칸에 봉안함으로써 예법을 크게 무시하는 誤禮를 남겼다. 이후 4차례나 더 있었던 追崇도 조부를 계승하여 즉위한 경우 생부나 백부를 追崇·祔廟하여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시왕의 현실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진행된 것이었다²¹⁾. 물론 德宗이나 元宗의 추숭은 禮官이나 言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주 어렵게 추진되었다²²⁾.

-
- 18) 부모의례의 중요성은 ① “3년이 지난 후에 신주를 종묘에 들여놓고 보통옷 차림으로 조정에 나오는 것은 임금이 올바른 정사를 펴는 첫 시작으로서 가장 큰 경사인데 어찌 축하를 올리고 제사에 쓰고 남은 음식으로 연회를 차리는 성대한 의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孝宗實錄』 효종 2년 5월 신축 條) ② 부모 사실을 백성에게 널리 알리는 교서를 반포하면서 大赦頒을 선포하였다. ③ 과거시험을 베풀었다는 등의 기록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19) 太祖의 신주를 부모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왕조 최초의 부모였는데 예조에서 상정한 祔廟禮가 실록(『太宗實錄』太宗 8년 9월 15일 경인)에 상세하게 실려 있고, 부모도감이 설치되어 일체를 주관하였다.(『太宗實錄』太宗 10년 5월 3일 기사) ‘太宗祔廟儀註’는 이후 부모례의 본보기가 되었다(『世宗實錄』세종 6년 6월 14일 정오).
- 20) 최초의 移安禮는 세종 때 정종을 부모하기에 앞서 최초로 목조를 영녕전으로 이안할 때 행해졌으며, 이안례가 끝나면 安神祭를 거행하였다.(『世宗實錄』세종 3년 12월 10일) 조천례의 실례는 『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2월 정사조에 ‘祔太廟時替遷之禮’라는 이름으로 상세하게 실려 있다.
- 21) 仁祖는 생부를 元宗으로 追崇·祔廟하여 祖父인 宣祖를, 正祖는 伯父를 眞宗으로 追崇·祔廟하여 조부인 英祖를 계승하는 형식을 각각 갖추었다.
- 22) 덕종은 성종 7년, 원종은 인조 13년에 가서야 추숭·부모되었으므로 7년에서 13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

한편 걸가지에서 大統을 계승한 宣祖나 哲宗·高宗 등의 경우에는 생부를 대원군으로 추존하는 데 그쳤을 뿐 부묘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신주봉안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묘건축은 계속해서 증진되었다. 그리하여 종묘의 신실은 초기의 石室 5칸에서 神室 19칸으로, 영녕전은 창건 당시의 신실 4칸에서 16칸으로 증진되었다.

III. 朝鮮王朝의 王位繼承과 神主奉安

1. 王位繼承

조선왕조 왕위계승의 구체적 성격을 종묘와 연관지어 이해하기 위하여 신주봉안 현황과 왕위계승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한 것이 <표 1>이다²³⁾. 여기서는 왕의 호칭으로 廟號와 諡號를 아울러 적었다²⁴⁾.

묘호는 공이 큰 왕에게는 ‘祖’, 덕이 많은 왕에게는 ‘宗’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太祖를 제외하고는 모두 宗으로 묘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世祖와 仁祖는 靖難이나 反正를 통해 등극하여 왕통을 다시 세웠으므로 祖라 칭하고 宣祖는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 공로를 빌미로 부묘할 때는 宣宗이었던 것을 6년 뒤인 광해군 8년에 묘호를 祖로 개정하였다²⁵⁾. 한편 2대 공정왕의 신주는 묘호도 없이 봉안되어 오다가 숙종때 이르러 비로소 定宗이라는 묘호를 가지게 되었다²⁶⁾.

요하였고 그 기간 동안 王權과 臣權 사이에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원종 추승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李迎春, 앞 글, 제3장 仁祖의 宗統과 元宗 追崇, 124~133쪽 참조.

23) 李迎春, 앞 글, 73~75쪽의 <표 1>, <표 2>, <표 3> 참조.

24) 王의 칭호는 穆祖부터 顯宗까지는 『宗廟儀軌』(肅宗 31年刊)의 ‘各室 位號’條를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책 ‘各室位版題式’條에서는 太祖부터 元宗까지는 ‘有明 贈諡·諡號·廟號·尊號·大王’이라는 식으로 적고, 仁祖부터 顯宗까지는 ‘有明 贈諡’를 쓰지 않고 묘호·시호 순으로 적었는데 이는 明의 멸망으로 인하여 明皇帝의 誥命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숙종 때 복위된 단종도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숙종 7년에야 비로소 定宗이라는 묘호가 追上된 제2대 공정왕에 대해서는 ‘有明 贈諡’를 적용하였다. 한편 추존 4조는 穆王·翼王·度王·桓王으로 적고 있다. 또 숙종 이후 철종까지의 칭호는 『朝鮮王室 狀誌彙編』(高宗年刊)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는 대한제국 이전의 명칭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난 뒤인 1899년에는 9월 1일에 莊獻世子를 높여 莊宗으로 추승하여 종묘에 부묘하고 또 얼마 안가서 12월 7일에는 太祖·莊宗·正宗·純祖·翼宗에게 황제 칭호를 올림으로써 호칭이 바뀌었다. 황제 칭호는 위 표에 정리한 대로 太祖·莊祖·正祖·純祖·文祖로 결정되었다. 다시 융희 2년(1908) 5월 15일에는 眞宗·憲宗·哲宗을 황제로 추존하였다. 고종과 순종은 이후 민족수난기에 세상을 떠났는데 종묘에 부묘되는 과정에서 전례를 따라 시호를 황제로 정하였다.

25) 『宗廟儀軌』(肅宗 31年刊) ‘廟號’條

이밖에 英祖·正祖·純祖는 묘호가 원래 英宗·正宗·純宗이었으나 고종 때 모두 祖로 개정되었다. 즉,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2년 뒤인 1899년에는 太祖·莊宗·正宗·純祖·翼宗의 신주를 황제위로 높여 太祖·莊祖·正祖·純祖·文祖로 묘호를 개정하여 묘호에 祖를 쓴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²⁷⁾.

적장자로서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있었던 계승자는 27왕 가운데 文宗·端宗·燕山君·仁宗·顯宗·肅宗·正祖·純祖·憲宗·純宗 등 10왕뿐이며 나머지 17왕은 <표 1>에서 보듯 종법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었다. 왕위의 계승방식은 초기에 3차례 연속으로 禪位한 것 말고는 대부분 선왕 사후에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으로는 世祖에 의한 篡位, 中宗의 反正과 仁祖의 反正 등이 있었다.

2. 神主奉安 現況과 歷史的 過程

① 현황

종묘와 영녕전의 신주봉안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즉 종묘의 신실이 19칸, 영녕전의 신실이 16칸이어서 신실이 모두 35칸인데, 정작 寶位에 올랐던 27왕 가운데서도 2왕은 폐위되었으므로 25왕의 신주만 종묘와 영녕전에 모셔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신실 10칸은 왜 더 필요했던 것일까?

종묘의 신실 19칸 가운데 18칸에는 즉위했던 왕의 신주가 봉안되었고, 나머지 한 칸에만 추존된 익종(헌종의 생부)의 신주가 봉안되었다.(圖 3, 圖 4, 圖 5) 이 19칸 가운데 태조부터 익종까지의 15칸은 不遷位를 모시는 世室이며²⁸⁾, 제 16칸의 헌종 신주부터 제 19칸의 순종 신주까지는 아직 친진이 다하지 않은 신주로 조선왕조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조천되지 않은 신주이다.

- 26) 이보다 앞서 성종 6년 1월 15일(을축)에 공정대왕의 아들 무림군 선생 등이 상소하여 “예종대왕이 기축년(예종 1, 1469)에 공정대왕의 사당 이름을 ‘회종’이라 짓고 장차 세조대왕과 동시에 종묘에 모시게 하려고 이미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하가 왕위에 오른 이후 7년이 되었으나 시행하지 않기에 저이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성종은 회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해인 성종 7년 1월 10일에 추송한 생부 덕종을 부묘하면서 대수가 다하지도 않은 공정왕의 신주를 종묘 서협실로 移藏해 버렸다.
- 27) 英宗의 묘호를 英祖로 높이자는 의논은 고종 26년(1889) 12월 5일에 제안되었다.(『高宗實錄』 고종 26년 12월) 이듬해 1월 3일에는 개정된 존호와 묘호를 신주에 고쳐 써서 종묘에 봉안하였으며 이를 뒤인 1월 5일에는 이를 축하하는 교서가 반포되었다. 한편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정한 시기는 영종의 묘호를 영조로 개정한 때인 1889년부터 광무 3년(1899) 사이로 짐작된다.
- 28) 翼宗은 순조의 세자로서 대리청정까지 하던 중 부왕인 순조보다도 일찍 죽었다. 그의 아들 헌종이 순조의 적장손으로서 즉위하자 왕으로 추송하고 종묘에 부묘하였는데, 훗날 고종이 익종의 대통을 이어받는다는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뒤 당시 대왕대비였던 익종비 신정왕후와 의논하여 익종의 신주를 불천위로 정하였다(『高宗實錄』 高宗 12년 12월 21일 條 기사에 12월 15일에 불천위 결정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1> 朝鮮王朝의 王位繼承과 宗廟의 神主 奉安

代 數	王		왕위계승			종묘 신주 봉안처 (현재)	비 고
	稱帝 이전	稱帝 이후	자 격	방식	종법상 문제		
1	太祖康憲大王	太祖高皇帝		禪位		宗廟正殿 第1間	不遷位
2	定宗恭靖大王		太祖 次長子	禪位	世子 逐出	永寧殿 西夾 弟1間	祧 遷
3	太宗恭定大王		太祖 五嫡子	禪位	兄弟 계승	宗廟正殿 第2間	不遷位
4	世宗莊憲大王		太宗 三嫡子		廢世子	宗廟正殿 第3間	不遷位
5	文宗恭順大王		世宗 嫡長子	正統		永寧殿 西夾 弟2間	祧 遷
6	端宗大王		文宗 嫡長子	正統		永寧殿 西夾 弟3間	廢 位
7	世祖惠莊大王		世宗 二嫡子, 端宗 叔父	篡位	昭穆 失次	宗廟正殿 第4間	不遷位
	德宗懷簡大王			追崇		永寧殿 西夾 弟4間	祧 遷
8	睿宗襄悼大王		世祖 次長子		嫡長孫 月山大君 嫌位	永寧殿 西夾 弟5間	祧 遷
9	成宗康靖大王		世祖 二嫡孫, 德宗 二嫡子		德宗系 月山大君 嫌位 睿宗系 仁城大君 嫌位	宗廟正殿 第5間	不遷位
10	<燕山君>		成宗 嫡長子	正統			廢 位
11	中宗恭僖大王		成宗 二嫡子	反正	非嫡長·被推戴	宗廟正殿 第6間	不遷位
12	仁宗榮靖大王		中宗 嫡長子	正統		永寧殿 西夾 弟6間	祧 遷
13	明宗恭憲大王		中宗 二嫡子		兄弟 世襲	永寧殿 東夾 弟1間	祧 遷
14	宣宗昭敬大王		中宗 七庶子 德興君의 三嫡子		明宗遺志·同宗入繼	宗廟正殿 第7間	不遷位
15	<光海君>		宣祖 二庶子		永昌大君·臨海君嫌位		廢 位
	元宗恭良大王			追崇		永寧殿 東夾 弟2間	祧 遷
16	仁祖憲文大王		宣祖 五庶子 定遠君의 嫡長子	反正	入繼宣祖大統 昭穆越序	宗廟正殿 第8間	不遷位
17	孝宗宣文大王		仁祖 次嫡子		非嫡長	宗廟正殿 第9間	不遷位
18	顯宗純文大王		孝宗 嫡長子	正統		宗廟正殿 第10間	不遷位
19	肅宗顯義大王		顯宗 嫡長子	正統		宗廟正殿 第11間	不遷位
20	景宗德文大王		肅宗 庶長子		嫡子出生前 建儲早定	永寧殿 東夾 弟3間	祧 遷
21	英宗至行大王		肅宗 二庶子		兄弟承繼·世弟早定	宗廟正殿 第12間	不遷位
	眞宗大王	眞宗昭皇帝		追崇		永寧殿 東夾 弟4間	祧 遷
	莊宗大王	莊祖懿皇帝		追崇		宗廟正殿 第13間	祧 遷
22	正文文成大王	正祖宣皇帝	英祖 長孫, 思悼世子嫡長子	正統		宗廟正殿 第13間	不遷位
23	純宗淵德大王	純祖肅皇帝	正祖 次庶子	正統		宗廟正殿 第14間	不遷位
	翼宗體元大王	文祖翼皇帝		追崇		宗廟正殿 第15間	不遷位
24	憲宗體健大王	憲宗成皇帝	純祖 嫡長孫, 翼宗嫡子·獨子	正統		宗廟正殿 第16間	不親盡
25	哲宗熙倫大王	哲宗章皇帝	正祖庶弟 恩彦君 嫡孫		入繼純祖	宗廟正殿 第17間	不親盡
26		高宗太皇帝	麟坪大君 後孫 興宣君 三嫡子		入繼翼宗	宗廟正殿 第18間	不親盡
27		純宗孝皇帝	高宗 嫡長子	正統		宗廟正殿 第19間	滅宗社
		英親王	純宗 嫡長子	正統		永寧殿 東夾 弟6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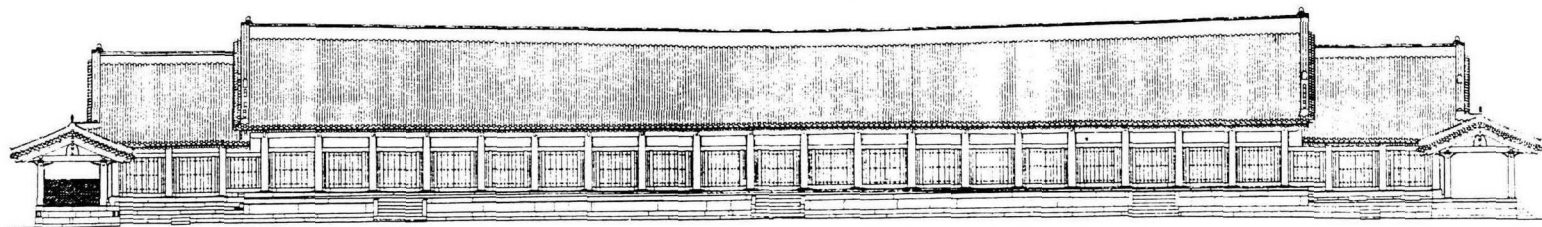


圖 3. 宗廟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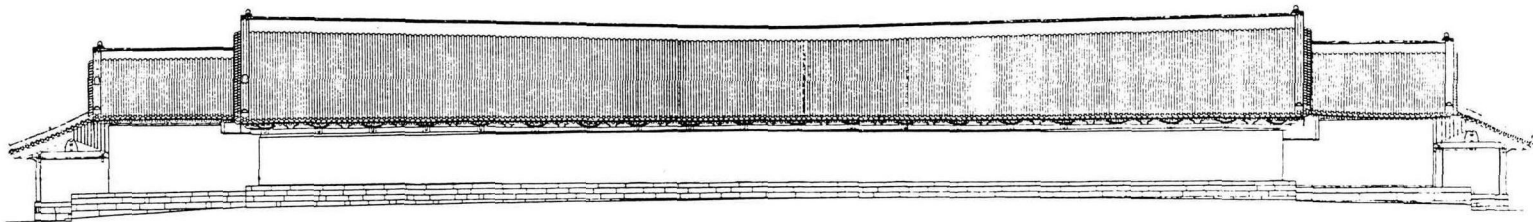


圖 4. 宗廟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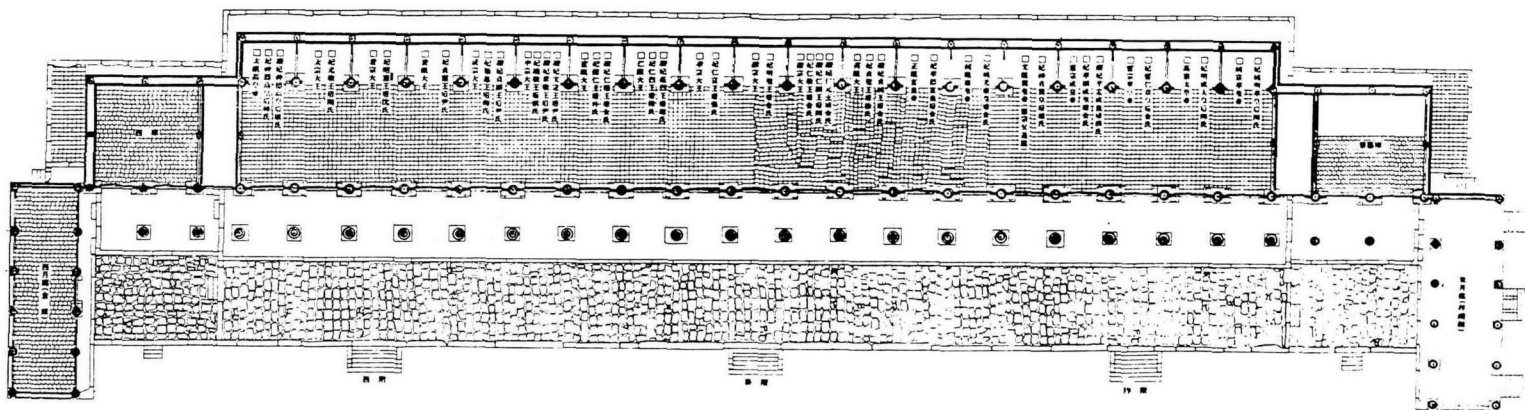


圖 5. 宗廟 평면도

한편 영녕전의 중앙 4칸은 목조·익조·도조·환조의 신주를 모신 四祖殿이며, 좌우 익실은 조 천된 11位와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신주 등 12位를 모신 조묘이다. 12위 가운데 7왕 즉 정종·문종·단종·예종·인종·명종·경종 등은 즉위했던 임금이고, 4위는 덕종·원종·진종·장조 등 추존된 왕이며, 1위는 황태자로서 부묘된 영친왕의 신주이다. 영친왕의 신주는 종묘에 부묘될 자격이 없었으나 전주이씨 종친회의 결정으로 1970년에 영녕전에 부묘되었던 것이다.

② 歷史的 過程

현재 영녕전 夾室에 모셔진 신주는 모두 원래 종묘에 부묘되었던 것이며 대수가 다하기 전까지는 서쪽 神室로 移奉을 거듭하다가 대수가 다한 이후에 영녕전으로 조천된 것이다. 그런데 祔廟와 親盡을 맞이할 무렵이면 宗法的 正統性이나 생전의 功過 등이 禮論上 쟁점으로 부각되기 마련이었다. 역대 임금의 부묘 과정과 조천 과정 그리고 세실 결정 과정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정치적 쟁점까지도 엿볼 수 있다. <표 2>는 부묘의 시기와 장소, 조천의 시기와 장소 및 세실 결정 시기 등을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부묘 시기를 보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인 경우 先王의 3년상이 끝나는 시점 즉 時王 2년이나 3년에 부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태조나 태종처럼 禪位한 경우라든지, 덕종이나 원종처럼 무리하게 추송한 경우에만 부묘시기가 늦추어진다.

부묘 장소는 神主奉安法으로 昭穆法을 채택하느냐 西上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결정된다. 昭穆法을 따른 경우 同堂同室의 廟制에서는 2세가 親盡으로 조천되면 2세의 자리(1昭)에 4세가 移奉되고, 4세의 자리(2昭)에 새로운 신주 즉 6세가 봉안된다. 아래 <그림 1>은 동당동실제의 묘제에서 소목법에 따라 신주를 봉안한 경우 신주의 이동 상황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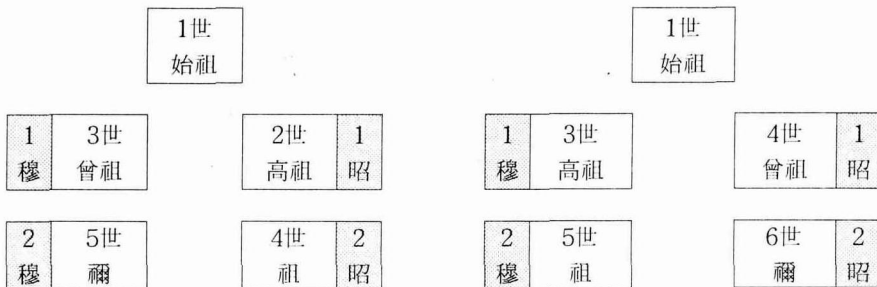


그림 1. 同堂同室制(昭穆法)에서 神主의 이동

한편 조선왕조에서는 창건 당시부터 同堂異室의 묘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봉안 법으로는 소목법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신주의 이동 상황을 그려본 것이다.

2穆	1穆	不遷位	1昭	2昭
5世 禰	3世 曾祖	1世 始祖	2世 高祖	4世 祖

2穆	1穆	不遷位	1昭	2昭
5世 祖	3世 高祖	1世 始祖	4世 曾祖	6世 禰

桓祖	翼祖		穆祖	度祖
----	----	--	----	----

桓祖	翼祖	太祖	度祖	恭靖
----	----	----	----	----

그림 2. 同堂異室制(昭穆法)에서 神주의 이동

그러나 同堂異室의 묘제에서 西上法을 채택한 경우라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2세를 조친하고 3세·4세·5세를 서쪽 神室으로 차례로 移奉한 뒤 5세가 있던 방에 6세를 부묘하는 방식을 따랐을 것이다. 이때 만일 2세를 불천위로 정하면 두 번째 방은 世室이 되고 3세를 조친하지 않는 한 신실이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동쪽으로 신실을 증진해야만 불천위와 사친을 모두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인정과 예법을 모두 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五廟制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다.

第1室	第2室	第3室	第4室	第5室
1世 始祖	2世 高祖	3世 曾祖	4世 祖	5世 禰

第1室	第2室	第3室	第4室	第5室
1世 始祖	3世 高祖	4世 曾祖	5世 祖	6世 禰

그림 3. 同堂異室制(西上法)에서 神주의 이동

조선왕조에서는 세종조에 이르러 묘제와 신주봉안의 대원칙을 마련하였는 바 첫째, 종묘와 별묘를 따로 설치하는 묘제 둘째, 형제계승의 경우 형제의 신주를 각 방에 모시되 한 대로 간주하는 신주봉안 원칙 셋째, 서쪽 신실을 상위로 정하는 서상법 등을 채택하였다. 이후 연산군 때 이르러 비로소 태종을 불천위로 정함으로써 ‘同堂異室 안에 世室을 갖춘 廟制’가 성립되었다. 이후 종묘는 세실이 늘어날 때마다 동쪽으로 신실을 증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29) 同堂異室, 西上法, 兄弟 昭穆, 世室 濫設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조선왕조의 묘제에 대하여 周나라의 同堂同室式 五廟制와 昭穆法에 맞추어 완전히 고쳐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임진왜란 이후에 종묘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天災로 말미암아 戰前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宣祖實錄』 선조 40년 3월 17일 경진 條, 같은 해 4월 7일 기해 條, 4월 14일 병오 條, 4월 17일 기유 條, 4월 22일 갑인 條, 4월 26일 무오 條·참조).

종묘가 계속해서 증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실의 증가와 형제계승으로 인한 신실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세실의 지정은 선왕 가운데 특정 임금을 공덕이 크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왕과 그 신하들이 종묘에서 백세토록 제향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실 결정 당시의 정치적 성격이 반영되게 마련이었다. 태종의 후사인 세종은 太宗 王統의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부인 공정왕을 부묘하면서 묘호조차 올리지 않는 變禮를 저질렀다. 또 세조의 후사를 이은 왕들은 世祖 王統의 正統性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공정왕과 문종의 신주를 꺾박하였다. 즉, 成宗은 공정왕의 신주를 신실이 아닌 西夾室로 移藏하였고, 燕山君도 이를 근거로 문종을 서협실로 移藏하는 변례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세조의 신주는 불천위로 결정되었다³⁰⁾.

이후 성종은 인조 때 친진으로 인한 조천을 앞두고 불천위로 결정되었다³¹⁾. 또 중종은 효종이 인조를 부묘할 때 대수가 다하였으나 中宗 王統의 보존을 위하여 불천위로 정해졌다. 선조는 숙종 때 현종 부묘를 앞두고 대수가 다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를 다시 일으킨 중흥의 공이 있다 하여 불천위로 지정되었다. 인조와 효종도 숙종 9년에 불천위로 정해졌는데 이때는 친진도 되지 않은 효종을 미리 불천위로 정하자는 송시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次嫡子인 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仁祖까지 한꺼번에 불천위로 정해졌다. 더구나 인조는 효종 때 부묘하면서 묘호를 祖로 결정해 두었기에 불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³²⁾.

30) 세조는 선조때에야 친진이 되므로 그때 가서 불천위로 정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면 적어도 성종 6년에는 불천위로 정해진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성종 6년 9월 16일(임술), 9월 19일(을축), 10월 6일 등의 기사인데, 여기서는 태조·태종·세종·세조 등 4왕이 이미 불천위로 정해져 있다고 적혀 있다. 즉, ① 성종 6년 9월 19일(을축): 홍기달 등의 견해에서 “臣等議 宗廟七室 太祖太宗世宗世祖俱是不遷之主 今 懷簡大王祔 宗廟則例三世而遷若別廟則自位一祀與 宗廟祧遷之制不同 可得永久矣”, ② 성종 6년 10월 6일(임오) 정창손 등의 제의에서 況不遷之主今以四位則萬世之後 必加構矣”라는 등의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태종의 신주가 실제 불천위로 결정된 시점이 연산군 2년 1월 19일(무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종과 세조의 신주를 불천위로 확정지은 시점은 연산군~명종 사이일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明宗實錄』명종 1년 4월 8일조에 “太宗과 世宗은 功德으로 百世不遷之主로 되어 있고 문종은 세조와 1세로 되어 있으나 世祖 역시 百世不遷之主이며……”라는 기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31) 성종에 대해서는 연산군 원년에 사간원이 미리 불천위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었으나 담당 관청인 예조에서 주나라의 고사를 들어 후세의 공론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아뢰으로써 예조의 견해대로 불천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조 13년에 가서야 불천위로 확정되었다(『燕山君日記』燕山君 元年 12월 30일 기묘).

32) 숙종 이전의 불천위 결정 과정은 『朝鮮王朝實錄』의 해당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宗廟儀軌』(肅宗 31年刊)의 ‘世室’條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2> 朝鮮王朝 宗廟의 神主奉安 實態

代數	왕	祔 廟		祧 遷		世 室 결정 시기	비 고
		시 기	장 소	시 기	장 소		
1	太祖	태종10-0726	宗廟石室 중앙			창건 당초	宗廟 創建: 太室 7間, 左右 翼室 各 2間
2	定宗	세종03-1218	宗廟石室第5間7	연산03-0211	別廟西夾1		
3	太宗	세종06-0614	종묘 東室			연산02-0119	
4	世宗	문종02-0410	"			성종 7년 덕종 부묘후	永寧殿 창건: 四祖殿 4칸 좌우익실 各 2칸
5	文宗	단종02-0716	"	선조 2년	別廟西夾2		
6	端宗	숙종24-1224	別廟西夾第3間				
7	世祖	성종01-1216	종묘 東室			성종 7년 덕종 부묘후	
	德宗	성종07-0110	宗廟石室第5間	광해02-0411	별묘동협1		
8	睿宗	성종03-0118	종묘 제7칸	광해02-0411	별묘동협2		
9	成宗	연산03-0211	종묘 제7칸			인조13-0306	
10	燕山						
11	中宗	명종02-0112	종묘 제9칸			효종02-0705	
12	仁宗	명종02-0917	종묘 제10칸	현종02-0705	별묘동협2		
13	明宗	선조02-0816	종묘 제11칸	현종02-0705	별묘동협3		종묘 増建: 11칸
14	宣祖	광해02-0411	종묘 제9칸			숙종02-0626	
15	光海						종묘 再建 영녕전증건: 좌우익실 3칸
	元宗	인조13-0320	종묘 제10칸	경종02-0811	별묘동협4		
16	仁祖	효종02-0707	종묘 제11칸			숙종09-0230	
17	孝宗	현종02-0707	종묘 제10칸			숙종09-0221	
18	顯宗	숙종02-1015	종묘 제11칸			영조48-1022	영녕전증건: 좌우익실 4칸 全面 修改
19	肅宗	경종02-0811	종묘 제11칸			영조05-1201	
20	景宗	영조02-1013	종묘 제12칸	현종03-0107	별묘동협3		
21	英祖	정조02-0502	종묘 제13칸			정조06-1127	종묘 増建: 15칸
	眞宗	정조02-0502	종묘 제14칸	철종02-0806	별묘동협4		
	莊祖	광무03-1125	종묘 제13칸	고종 부묘시	별묘동협5		
22	正祖	순조02-0809	종묘 제15칸			순조02-0809	
23	純祖	현종03-0107	종묘 제16칸			현종01-0113	
	翼宗	현종03-0107	종묘 제17칸			고종12-1215	
24	憲宗	철종02-0806	종묘 제17칸				종묘 増建: 19칸, 永寧殿増建: 좌우익실 6칸
25	哲宗	고종03-0206	종묘 제18칸				
26	高宗	1921년	종묘 제18칸				
27	純宗	1928년	종묘 제19칸				1910년 亡國·退位
	英親王	1970년	別廟東夾第6間				이방자 여사 1989년에 追祔

이후 숙종·영조·정조 등도 후왕들에 의하여 불천위로 정해졌으며 특히, 순조는 嫡長孫인 헌종에 의하여 일찍이 불천위로 정해졌고³³⁾, 익종은 왕위에 오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그의 대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겉가지에서 즉위한 탓에 고종에 의하여 불천위로 결정되었던 것이다³⁴⁾.

3. 神主奉安과 宗廟建築의 變遷

1) 太祖~太宗代 : 종묘의 창건과 소목법

창건된 종묘에 봉안된 신주의 배열 방식 및 소목법에 따른 해석은 다음 그림과 같다³⁵⁾.



그림 4. 太宗 10년의 太祖 附廟(창건 종묘)

2) 世宗代 : 別廟의 創建 및 西上法의 채택³⁶⁾

① 恭靖王(定宗)의 부묘와 穆祖의 遞遷³⁷⁾

33) 『憲宗實錄』 憲宗 1년 1월 13일 條.

34) 『高宗實錄』 高宗 12년 12월 21일 條.

35) 창건 종묘의 규모와 형식은 『太祖實錄』 태조 4년 9월 29일조 기사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때 추존된 四祖의 신주를 어떻게 봉안하였는지는 『世宗實錄』 제128권 五禮 '神位'條의 다음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宗廟祫享設座於戶外自西以東穆祖度祖太祖并南向 翼祖桓祖并北向”. 또 이러한 신주봉안법의 근거가 權近의 『入學圖說』 『時禘之圖』(祫: 遠祖를 祫廟로 遞遷하는 일)에 실려 있다. 태조의 부묘에 대해서는 『태종실록』 태종 8년 9월 15일 條, 10년 6월 19일조, 10년 7월 26일 條 참조.

36) 『世宗實錄』 세종 3년 8월 5일 條. 예조의 건의대로 정전을 4칸, 동서 협실을 각 1칸으로 하고 이밖에 담이나 섬돌은 종묘와 동일하게 만들기로 함. 그런데 『國朝五禮序例』(성종 5년刊)의 '永寧殿圖說'에서는 동서 협실을 각 2칸으로 그리고 있어서 창건 이후부터 성종 이전까지 사이 언제인가 증건된 것으로 보인다.

37) 穆祖의 체천은 세종 3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고, 恭靖王의 부묘는 廟號도 정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世宗實錄』 세종 3년 12월 16일 條, 12월 18일 條).

		太 室							
		西虛室	石 室			東虛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翼祖	第2間 度祖	第3間 桓祖	第4間 太祖	第5間 恭靖王		東夾室(右翼室)

1世	2世	3世	4世	5世
----	----	----	----	----

그림 5. 世宗 3년의 恭靖王 부모(종묘)

		神 室					
西夾室		第1間 穆祖	第2間	第3間	第4間	東夾室	

그림 6. 世宗 3년의 穆祖 체천(영녕전)

② 太宗의 부모³⁸⁾

		太 室							
		西虛室	石 室			東虛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翼祖	第2間 度祖	第3間 桓祖	第4間 太祖	第5間 恭靖王	第6間 太宗	東夾室(右翼室)

1世	2世	3世	4世	5世
----	----	----	----	----

그림 7. 世宗 6년의 太宗 부모(종묘)

3) 文宗代 : 世宗의 祔廟와 翼祖의 遞遷³⁹⁾

		太 室							
		西虛室	石 室			東虛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度祖	第2間 桓祖	第3間 太祖	第4間 恭靖王	第5間 太宗	第6間 世宗	東夾室(右翼室)

1世	2世	3世	4世	5世
----	----	----	----	----

그림 8. 文宗 2년의 世宗 부모(종묘)

38) 『世宗實錄』 세종 6년 6월 정사 14일條, 『성종실록』 성종 1년 3월 경진 21일 기사條에서는 太宗祔廟儀를 언급하면서 그때 태종을 종묘 東室에 모셨다고 하였음. 그러나 창건 당시 東室이나 西室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39) 翼祖의 체천은 문종 2년 4월 계유일에, 世宗의 부모는 하루 뒤인 갑술일에 거행되었다(『文宗實錄』 문종 2년 4월 계유條, 갑술條).

		神 室					
西夾室		第1間 穆祖	第2間 翼祖	第3間	第4間	東夾室	

그림 9. 文宗 2년의 翼祖 체천(영녕전)

4) 端宗代 : 文宗의 부묘와 度祖의 체천⁴⁰⁾

		太 室							
		西虛室	石 室				東虛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桓祖	第2間 太祖	第3間 恭靖王	第4間 太宗	第5間 世宗	第6間 文宗	東夾室(右翼室)	
		1世	2世	3世		4世	5世		

그림 10. 端宗 2년의 文宗 부묘(종묘)

		神 室					
西夾室		第1間 穆祖	第2間 翼祖	第3間 度祖	第4間	東夾室	

그림 11. 端宗 2년의 度祖 체천(영녕전)

5) 成宗代

① 世祖의 부묘와 桓祖의 西虛室 移奉⁴¹⁾

		太 室							
		西虛室	石 室				東虛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桓祖	第2間 太祖	第3間 恭靖王	第4間 太宗	第5間 世宗	第6間 文宗	第7間 世祖	東夾室(右翼室)
		1世	2世	3世		4世	5世		

그림 12. 成宗 2년의 世祖 부묘(종묘)

40) 度祖의 체천은 단종 2년 7월 15일, 文宗의 부묘는 하루 뒤인 7월 16일에 거행되었다(『端宗實錄』 단종 2년 7월 15일 條 및 16일 條).

41) 『成宗實錄』 성종 1년 12월 16일 條.

②睿宗의 부모와 桓祖의 체천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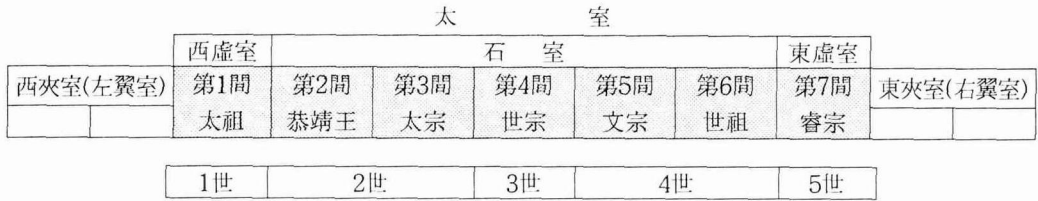


그림 13. 成宗 3년의 睿宗 부모(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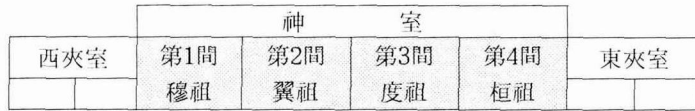


그림 14. 成宗 3년의 桓祖 체천(영녕전)

이때 석실 옆의 좌우 허실도 모두 신실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성종 6년 1월 1일에 시행된 종묘와 영녕전 건물의 개수 공사에서 石室과 虛室의 구분이 없어지고 결국 七廟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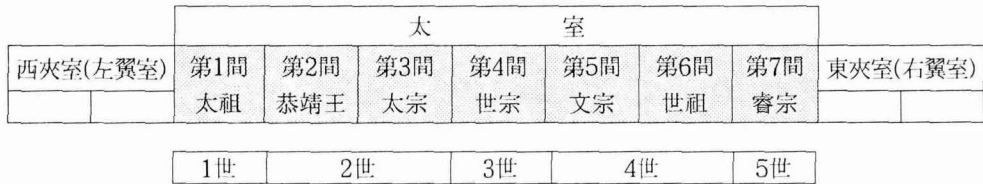


그림 15. 成宗 6년에 개수된 종묘

③ 德宗의 부모와 恭靖王의 서협실 移藏⁴⁴⁾

종묘를 증진하지 않으면서 덕종을 부모하는 방법은 단 하나, 아직 친진이 안된 공정왕의 신주를 서협실로 이봉하는 것이 묘책이었다. 이때 물론 태종을 정통으로 남겨 두고 공정왕을 체천시켜 태종 왕통의 정통성을 확립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42) 『成宗實錄』 성종 3년 1월 18일 條.

43) 『成宗實錄』 성종 6년 1월 1일 條.

44) 『成宗實錄』 성종 7년 1월 을묘 條. 성종은 생부를 회간대왕으로 추존하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인신과 고명을 받아내는 한편 종묘에 부모하면서 덕종이라는 묘호를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禮官과 諫官 및 大臣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은 “은혜와 원칙이 함께 밝혀지고 인정과 예절도 갖추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옛 법을 상고해 보아도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에 비추어 보아도 부합된다. 더구나 대왕대비가 늘 이렇게 하도록 나에게 귀땀하면서 극진하게 타이르고 있으니 나의 간절한 심정으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成宗實錄』 성종 6년 9월 정묘 條)라고 반박하면서 덕종의 부모를 성사시켰다.

		太 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第2間	第3間	第4間	第5間	第6間	第7間	東夾室(右翼室)	
恭靖王 (第2室)	太祖 (第1室)	太宗 (第3室)	世宗 (第4室)	文宗 (第5室)	世祖 (第6室)	德宗 (第7室)	睿宗 (第8室)		
2世		1世	2世	3世	4世		5世		

그림 16. 成宗 7년의 德宗 부모와 恭靖王의 서협실 移藏(종묘)

6) 燕山君代

成宗을 부묘하려 할 때 종묘의 태실 7칸과 영녕전의 四祖殿은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에도 성종이 덕종을 부묘할 때 썼던 묘책 즉, 증건을 하지 않고 성종의 신위를 부묘한다는 명분 아래 恭靖王을 영녕전 좌익실(서협실)로 祧遷하고, 文宗을 종묘 서협실(공정왕의 신주가 이봉되어 있었던 방)로 移奉하는 방안을 택하였다⁴⁵⁾. 그결과 혈연적 후사가 끊긴 공정왕과 문종은 종묘에서 밀려나고 현실적으로 왕권을 잡은 태종·세종·세조로의 왕위계승이 정통성을 띤 것으로 확립된다. 이때 태종은 불천위로 정해져서 종묘의 신실은 5칸밖에 남지 않게 된다⁴⁶⁾.

		太 室							
西夾室(左翼室)	第1間	第2間	第3間	第4間	第5間	第6間	第7間	東夾室(右翼室)	
文宗	太祖	太宗	世宗	世祖	德宗	睿宗	成宗		
4世		1世	2世	3世	4世	5世		6世	
曾祖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제4실	제1실	제2실	제3실	제5실	제6실	제7실	제8실		

그림 17. 燕山君 3년의 成宗 부모와 文宗 移藏(종묘)

45) 『燕山君日記』 연산군 원년 10월 2일 신해 條, 이때 예조판서 성현과 예조참판 신중호 등이 '祧遷儀'를 지어 올렸는데 이는 조선왕조 최초의 조천 의례이다. 한편 그때까지 配位도 없이 홀로 모셔져 온 文宗을 조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언관들의 반대 상소(연산군 원년 11월 29일 무신 조, 2년 1월 23일 임인 조, 2월 8일 병진 조)가 빚발쳤으나 결국 '祖宗의 뜻에 따라 증건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공정왕을 조천하고 문종을 이봉하였던 것이다(『燕山君日記』 연산군 3년 2월 11일 계미 條).

46) 그림 17에서 실의 순서는 『明宗實錄』 명종 1년 4월 8일 조 기사를 근거로 한 것임. 또 그림 17 이하의 그림에서 불천위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神室							
西夾室		第1間	第2間	第3間	第4間	東夾室	
恭靖		穆祖	翼祖	度祖	桓祖		

그림 18. 燕山君 3년의 恭靖王 조천(영녕전)

7) 明宗代

명종이 즉위했을 때는 중종의 居喪 기간이었고, 또 만 2년 뒤에는 인종의 부묘가 있을 예정이었다. 종묘의 神室이 최소한 2칸 이상 부족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增建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4칸을 증건하기로 결정하고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신주를 창덕궁 인정전으로 移安한 다음 증건 공사를 진행하였다⁴⁷⁾. 공사가 완료되자 옮겼던 신주를 창덕궁 인정전으로부터 종묘로 還安함과 아울러 서협실로 내모셔졌던 문종을 제4실로 환안하여 연산군대의 誤禮를 개선하였다⁴⁸⁾.

① 中宗의 부묘

중종을 부묘하기 전에 종묘를 7칸에서 11칸으로 증건하고 서협실에 이봉되어 있던 문종을 太室 第4間으로 還安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이하 성종까지는 동쪽으로 한 칸씩 이봉되었고 중종은 새로 지은 부분인 제9칸에 부묘되었다⁴⁹⁾.

太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文宗	世祖	德宗	睿宗	成宗	中宗			
不遷位			高祖		曾祖		祖		祧			

그림 19. 明宗 2년의 中宗 부묘(11칸으로 증건된 종묘)

47) 종묘의 증건에 대하여 당시 史臣의 비판적인 논평이 실록에 실려 있어서 주목된다. (『明宗實錄』 명종 원년 4월 8일 갑오, “사신은 논한다. 同堂異室의 제도는 後漢 이후부터 그대로 써왔으니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의 세대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사당의 間架가 長屋을 이루어서 四時의 大祭도 한 사당 안에서 扃享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구차한 묘제는 없을 것이다”).

48) 『明宗實錄』 명종 원년 3월 22일 기묘, 4월 8일 갑오, 4월 23일 기유, 7월 8일 임술, 9월 17일 신미, 9월 24일 무인, 9월 29일 계미 條 참조.

49) 『明宗實錄』 명종 2년 1월 12일 을축 條.

② 仁宗의 부묘⁵⁰⁾

太室												
西夾室	제1칸 太祖	제2칸 太宗	제3칸 世宗	제4칸 文宗	제5칸 世祖	제6칸 德宗	제7칸 睿宗	제8칸 成宗	제9칸 中宗	제10칸 仁宗	제11칸	東夾室
不遷位			高祖		曾祖		祖		禰		兄弟	

그림 20. 明宗 2년의 仁宗 부묘(11칸으로 증건된 종묘)

8) 宣祖代

명종을 부묘할 때 문종과 세조는 5대조로서 친진이 되었는데 세조는 일찍이 불천위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문종만 영녕전 서협실 제2칸으로 조천되었다⁵¹⁾.

太室												
西夾室	제1칸 太祖	제2칸 太宗	제3칸 世宗	제4칸 世祖	제5칸 德宗	제6칸 睿宗	제7칸 成宗	제8칸 中宗	제9칸 仁宗	제10칸 明宗	제11칸	東夾室
不遷位			高祖		曾祖		祖		禰			

그림 21. 宣祖 2년의 明宗 부묘(11칸으로 증건된 종묘)

神室							
西夾室		第1間 穆祖	第2間 翼祖	第3間 度祖	第4間 桓祖	東夾室	
1間 恭靖	2間 文宗						

그림 22. 宣祖 2년의 文宗 조천(영녕전)

9) 光海君代

① 종묘의 재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종묘는 선조 38년(1605) 3월 12일 이후의 거듭된 ‘廟制 改正 論議’에도 불구하고 소실되기 이전의 묘제대로 복원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1년 5월에 낙성된 종묘는

50) 『明宗實錄』 명종 2년 9월 17일 을축 條.

51) 『宣祖實錄』 선조 2년 8월 16일 정사 條. 단 이날의 기사에는 문종의 조천 사실을 적고 있지 않다. 더구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종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春秋館이 공정왕과 문종의 조천 일시를 조사하였으나 세종실록·문종실록·성종실록·연산군일기를 모두 상고해도 문종의 조천 일시는 알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宣祖實錄』 선조 40년 6월 29일 경신 條).

전과 같은 규모인 11칸이었고, 영녕전은 동서 협실이 각 1칸씩 증건된 규모였다⁵²⁾. 재건된 건물에 신주를 還安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四祖殿을 포함하고 있는 영녕전에 모실 신주를 먼저 옮겨 모시고, 종묘에 모실 신주를 나중에 환안하되 차례상 조천하기로 되어 있는 두 신주는 제일 나중에 별도로 옮겨 모시기로 결정하였다⁵³⁾. 그런데 불타기 전에는 영녕전 서협실에 모셔져 있었던 공정왕 신주와 문종 신주가 이때 각각 동협실 제1칸과 제2칸으로 옮겨 모셔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서협실을 移安廳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⁵⁴⁾.

移安廳			神 室						
西夾室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東夾室		
							제1칸 恭靖	제2칸 文宗	제3칸

그림 23. 光海君 1년에 증축·재건된 영녕전의 신주방안 현황

② 宣宗의 부묘

광해군 2년 4월에는 재건된 종묘에 선종의 신주를 부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보다 두 달 앞서서 宣宗 祔廟禮와 德宗·睿宗의 祧遷禮에 대한 의논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⁵⁵⁾. 이때 조천된 신주를 공정왕과 문종의 옆 방에 모시려 해도 동협실은 1칸밖에 비어 있지 않았으므로

52) 선조 38년 3월 12일부터 선조의 발의로 시작된 '太廟 制度의 改正'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조정의 의견은 다음 3갈래로 갈라졌다. 즉, ① 이번 기회에 先王의 잘못된 묘제를 완전히 고치고 周制의 昭穆法을 따르자는 儒臣들의 의견, ② 明나라 종묘제도의 前朝後廢法을 따르자는 의견, ③ 우리나라 선왕의 제도를 고수하자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선조 40년 4월 17일까지 계속된 논의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淸나라가 발호하고 있다는 점, 대내적으로는 가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선조 40년 4월 22일에 묘제 개혁을 중지하라는 왕의 지시가 내렸다. 그리하여 예조의 건의대로 '周制를 따르지 못할 바에야 이전대로 하면서 칸수만 늘리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곧 종묘와 궁궐영건도감이 설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선조는 다음해 2월에 종묘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선조 때 진행된 공사에서 정전이나 영녕전을 어떻게 재건하기로 했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선조가 부묘될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즉 宣祖를 부묘할 때 親盡으로 인하여 德宗과 睿宗의 신주가 동시에 조천될 것인 바, 두 신주를 영녕전의 비어 있는 동협실 2칸에 모시면 영녕전의 신실은 모두 차게 되므로 추후 조천될 신주에 대비하여 영녕전 협실을 미리 증건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광해군 1년 5월에 낙성된(『光海君日記』 광해군 1년 5월 30일 條) 영녕전은 좌우 협실이 각 3칸으로 戰前보다 1칸씩 증건된 모습이었다(『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2월 11일 정사 條).

53) 『宣祖實錄』 선조 40년 8월 23일 계미 條.

54) 『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2월 정사 條. 祔太廟時替遷之禮 참조

55) 『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2월 정사 條 '祔太廟時替遷之禮', 3월 을미 條, 3월 정유 條, 3월 무술 條. 이때 祧遷 儀禮가 『五禮儀』 「圖說」에 따로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祧遷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었으며 그 결과 '미리 고하는 제사'와 '떠나는 것을 고하는 제사'에 제관뿐 아니라 종친, 제상, 3사의 고위 관리 등이 참여하도록 결정되었다.

서협실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리하여 공정왕과 문종의 신주는 서협 제1칸, 제2칸으로 移奉되었고 덕종과 예종의 신주는 동협실 제1칸, 제2칸에 遷奉되었으며⁵⁶⁾, 그 다음날 선종은 종묘 제9칸에 부묘되었다⁵⁷⁾. 이렇게 해서 영녕전 서협실을 이안청으로 쓰려던 재건 직후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광해군 8년에 宣宗은 宣祖로 묘호가 개정되었다⁵⁸⁾.

太 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仁宗	明宗	宣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그림 24. 光海君 2년의 宣宗 부묘(종묘)

神 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東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1칸	제2칸	제3칸
恭靖	文宗		穆祖	翼祖	度祖	桓祖	德宗	睿宗	

그림 25. 光海君 2년의 德宗·睿宗 조천

10) 仁祖代

인조는 反正으로 광해군을 廢位시키고 推戴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인 宣祖의 大統을 잇는다는 명분을 왕위계승의 정통성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생부를 元宗으로 추송하여 종묘에 부묘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오랜 동안 이어졌으나 인조 13년에 마침내 부묘에 성공하였다⁵⁹⁾.

太 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元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그림 26. 仁祖 13년의 元宗 부묘와 成宗 불천위 결정(종묘)

56) 『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4월 10일 을유 條.
 57) 『光海君日記』 광해군 2년 4월 11일 병술 條.
 58) 『宗廟儀軌』(肅宗 31年刊) '廟號'條
 59) 『仁祖實錄』 인조 13년 3월 20일 경오 條.

이때 인조의 5대조로 친진이 된 成宗은 원종의 부모를 얼마 앞두고 不遷位로 결정되었다⁶⁰⁾.

11) 孝宗代

효종 2년 7월 7일의 인조 부모를 앞두고 친진이 된 중종의 신주를 불천위로 결정하였다⁶¹⁾. 인조의 부모로 중묘의 신실 11칸은 신주로 가득 차게 되었다⁶²⁾.

太 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元宗	仁祖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祔		

그림 27. 孝宗 2년의 仁祖 부모와 中宗 불천위 결정(중묘)

12) 顯宗代

① 孝宗의 부모

孝宗을 중묘 제10칸에 부모할 때 친진이 된 仁宗과 明宗은 함께 조천되어 영녕전 동협실 제2칸과 제3칸에 봉안되었다. 이때 동협실 제1칸과 제2칸에 모셔져 있던 덕종과 예종의 신주는 서쪽으로 한 칸씩 遷奉되었다⁶³⁾. 이로 인하여 영녕전의 동서 협실이 모두 차서 빈 신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 60) 『仁祖實錄』 인조 13년 3월 6일 병진 條. 이때 성종을 불천위로 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대체학 최명길이었다, 일찍이 연산군 때 士林의 대표인 김일손과 이주가 성종을 불천위로 정하자고 건의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61) 『孝宗實錄』 효종 2년 7월 5일 경진 條, 7월 7일 임오 條.
- 62) 『孝宗實錄』 효종 2년 6월 정사 條. 부모 한 달 전에는 중묘 전체를 보수하기 위하여 역대 왕의 신주를 낡아 임시 장소에 모셨는데 사당 안에 바를 菱花紙를 구하지 못하여 공사 진척이 늦어진 결과 신주들이 임시 처소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 때문에 관련자들이 문책 받은 사건도 있었다.
- 63) 『顯宗實錄』 현종 2년 2월 15일 을미 條. 효종의 부모일(7월 7일)을 5개월쯤 앞두고 祧遷儀에 대한 의논이 개진되었을 때, 중추부판사 宋時烈은 “仁宗·明宗이 다 친진되었으므로 함께 옮기는 것은 가하나 朱子의 예법상 親屬關係와 義理關係는 앞으로는 구별지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인조의 신주를 부모할 때 예법상 인종의 신주를 먼저 옮겼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영녕전에 祧遷할 때에는 신주의 배열 위치를 달리하여 지난 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써 주장하였다. 또 5월 9일에는 다음과 같이 묘제의 개혁해야 명분도 바로 서고 이치에도 맞아 의리가 밝혀지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인종·명종을 함께 옮기는 것은 대수가 잦으니 그렇게 해야 하나 의리상 부자관계로 보아야 한다. ② 穆祖를 첫째 방에 모시어 시조로 삼고 태조·태종 이하의 세실의 禮도 周制를 따르자. ③ 태묘에 동서협실을 만들어 翼祖 이하의 조천된 신주를 봉안해야 한다. 그러나 형제를 한 대로 치는 것(兄弟同昭穆)은 『五禮儀』에도 실려 있고 唐宋 이래의 古禮여서 선왕들이 한번도 고친 적이 없다는 영의정 鄭太和의 의견에 따라 묘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7월 5일에는 인종과 명종의 신주를 함께 조천하고 7월 7일에는 효종의 신주를 부모하였다.

太 室												
西夾室	제1칸 太祖	제2칸 太宗	제3칸 世宗	제4칸 世祖	제5칸 成宗	제6칸 中宗	제7칸 宣祖	제8칸 元宗	제9칸 仁祖	제10칸 孝宗	제11칸	東夾室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	----	----	---	---

그림 28. 顯宗 2년의 孝宗 부모(중묘)

神 室									
西夾室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東夾室		
제1칸 恭靖	제2칸 文宗	제3칸 德宗					제1칸 睿宗	제2칸 仁宗	제3칸 明宗

그림 29. 顯宗 2년의 仁宗·明宗 조친(영녕전)

② 영녕전의 修改·増建

현종 4년의 修改工事に 대한 논의는 영녕전 건물의 퇴락과 신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⁴. 현종 8년에 가서야 신주를 慶熙宮 滄和堂·靈慶堂·資政殿 등으로 옮겨 놓고 수개공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협실이 正殿(四祖殿)과 같은 규모로 변경되고 아울러 좌우 1칸씩 증건되면서 영녕전은 신실 12칸 규모로 크게 변화되었다⁶⁵. 이때 협실의 신주봉안 방식으로 서협실 제4칸과 동협실 제4칸을 비워 두는 방안이 채택되었다⁶⁶.

神 室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恭靖	제2칸 文宗	제3칸 德宗	제4칸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제1칸 睿宗	제2칸 仁宗	제3칸 明宗	제4칸

그림 30. 顯宗 8년 改修·増建 뒤의 신주봉안(영녕전)

- 64) 『顯宗實錄』 현종 4년 3월 13일 신사 條, 어전회의에서 “영녕전 서익실 기둥 하나가 기울었다”는 병조판서 金佐明의 발의가 있자 바로 그날로 ‘永寧殿修理都監’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永寧殿修改都監의 제의로 ‘廟制와 廟室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의가 중지되었고 『顯宗實錄』 및 『顯宗改修實錄』 현종 4년 4월 3일 경자, 4월 10일에는 길한 해를 골라서 修改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4월 13일로 공사가 정지되었다.
- 65) 현종 8년의 영녕전 수개공사에 대해서는 1차 사료인 『永寧殿修改都監儀軌』(1687)가 남아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건물의 변천을 상세하게 밝힌 논고로는 金東旭, 「宗廟建築의 復元的 研究」, 『경기대학교논문집』 제20집(1987), 金東旭, 「조선시대 宗廟 正殿 및 永寧殿의 건물 규모 변천」, 『文化財』 21호(1989) 등이 있다.
- 66) 『肅宗實錄』 숙종 24년 12월 23일 갑자 條, 단종의 신주를 문종 아랫 자리이자 덕종 윗자리에 모시기 위하여 덕종의 신주를 옮겨야 했는데 이때 서협실 제4칸이 비어 있어서 덕종을 여기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13) 肅宗代

숙종대에는 현종을 부묘한 이외에도 宣祖·仁祖·孝宗 등 세 왕을 불천위로 삼는가 하면(67), 태종 이래 미루어져 왔던 恭靖王의 묘호를 定宗으로 정하고(68), 또 240여 년이나 미루어져 온 단종의 復位를 결단하여 그 신주를 영녕전 서협실 제3칸에 모시기도 하였다(69). 이때 원래 서협실 제3칸에 있던 덕종의 신주는 비어 있던 서협실 제4칸으로 옮겨 모셔졌다. 그결과 영녕전의 신실은 동협실 마지막 제4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종묘의 신실도 현종을 제11칸에 부묘함으로써 가득 차게 되었다.

太 室												
西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元宗	仁祖	孝宗	顯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祫	

그림 31. 肅宗 2년의 顯宗 부묘(종묘)

神 室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定宗	文宗	端宗	德宗	穆祖	翼祖	度祖	桓祖	睿宗	仁宗	明宗	

그림 32. 肅宗 24년의 端宗 복위·부묘(영녕전)

14) 景宗代

숙종의 부묘를 5개월 앞 둔 景宗 2년 3월에는 世次上 친진이 된 元宗을 종묘 제8칸으로부터 영녕전 동협실 제4칸으로 遷廟하기로 결정하였고(70), 2년 8월 11일에는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를 대표 제11칸에 모시고 祔祭를 거행하였다(71).

67) 肅宗 2년 6월 26일에는 현종의 부묘(2년 10월 15일)에 앞서 친진이 된 선조의 신주를 불천위로 정하였다. 또 숙종 9년 2월 21일에는 영부사 송시열이 올린 상소를 받아들여 孝宗을 불천위로 결정하였고, 그로부터 9일 뒤에는 仁祖를 불천위로 결정하였다(이상은 『肅宗實錄』 해당 날짜 기사 참조).

68) 『肅宗實錄』 숙종 7년 9월 18일 條.

69) 숙종 24년 9월 30일에 전 현감 申奎의 상소를 계기로 魯山君의 복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11월 6일에는 숙종의 결단에 힘입어 '純定安莊敬順大王'이라는 시호가 소급하여 올려지고 사당이름은 端宗, 능 이름은 장릉이라 결정되었다.(『肅宗實錄』 해당 일자 기사 참조.) 12월 21일에는 덕종을 서협실 제4칸으로 천봉하고 3일 뒤인 24일(정묘)에는 단종의 신주를 영녕전 제3칸에 부묘하였다.

70) 『景宗實錄』 경종 2년 3월 19일 갑진 條.

太 室												
西夾室	제1칸 太祖	제2칸 太宗	제3칸 世宗	제4칸 世祖	제5칸 成宗	제6칸 中宗	제7칸 宣祖	제8칸 仁祖	제9칸 孝宗	제10칸 顯宗	제11칸 肅宗	東夾室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	--	--	--	----	----	---	---

그림 33. 景宗 2년의 肅宗 부모(종묘)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定宗	제2칸 文宗	제3칸 端宗	제4칸 德宗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제1칸 睿宗	제2칸 仁宗	제3칸 明宗	제4칸 元宗

그림 34. 景宗 2년의 元宗 조천(영녕전)

15) 英祖代

종묘와 영녕전의 신실은-경종 2년의 부모와 조천으로 모두 찾았으므로 증건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경종을 부모하기 1년 전인 영조 1년 8월부터 증건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건물을 증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주를 移安해야 했으므로 이안 장소, 이안 방식, 이안시 임금이 행해야 할 예절 등이 먼저 논의되었다. 이안 장소는 현종 8년의 영녕전 수개 당시의 전례를 따라 慶德宮의 위선당·읍화당·자정전으로 결정되었으며⁷²⁾, 신주를 실어 나르는 연이 모자라서 두 차례로 나누어 실어다 안치하였다. 거상 중에 종묘에 참배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대신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영조는 이안할 때 직접 종묘를 바라보는 의식, 이안제, 환안 후의 참배 등을 몸소 거행하였다⁷³⁾. 그리하여 종묘 개수공사가 끝나고 신주가 경덕궁으로부터 환안된 것은 영조 2년 4월 3일이었⁷⁴⁾. 이로부터 6개월 뒤에 경종의 신주는 증건된 종묘의 제12칸에 부모되었다⁷⁵⁾. 한편 개수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영조 1년 12월 25일에는 장령 成震齡이 현종 때 효종 부모를 앞두고 송시열이 제기했던 묘제 개혁을 이번 기회에 실현시키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⁷⁶⁾. 한편 영조 48년에는 왕 자신의 발의로 현종을 미리 불천위로 정하였다⁷⁷⁾.

71) 『景宗實錄』 경종 2년 8월 11일 갑자 條.

72) 『英祖實錄』 영조 1년 8월 22일 정해 條, 영조 2년 1월 13일 병오 條.

73) 『英祖實錄』 영조 2년 1월 13일 병오 條, 2년 4월 3일 을축 條.

74) 종묘 개수공사의 모든 과정은 『宗廟改修都監儀軌』(영조 2년)에 수록되어 있는데 영조 1년 1월 13일의 신주이안 직후에 공사가 시작되어 3월 19일에 낙성되었다.

75) 『英祖實錄』 영조 2년 10월 13일 신미 條, 실록 기사 가운데 증건 규모를 의논한 부분에서는 도제주를 맡은 좌의정 민진원이 3칸을 증건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영조 1년 8월 22일 정해 條), 실제로는 4칸이 증건되어 종묘는 신실 15칸인 건물이 되었다(김동욱, 앞 글).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15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兄弟	

그림 35. 英祖 2년의 景宗 부모(종묘)

16) 正祖代

正祖는 두 번째로 세자에 책봉된 莊獻世子(1735~1761)의 아들이로서, 또 英祖의 世孫으로서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가지고 즉위하였다. 그러나 첫번째 세자였던 孝章世子(1719~1728)의 대를 잇는 형식을 밟았으므로 즉위 후 곧 효장세자를 眞宗大王으로 추존하였다⁷⁸⁾. 그리하여 英宗을 제13칸에 부묘하던 날 진종도 제14칸에 함께 부묘하였다⁷⁹⁾.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15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宗	眞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그림 36. 正祖 2년의 英宗·眞宗 부모(15칸으로 증건된 종묘)

17) 純祖代

순조는 종묘 제15칸에 선왕인 정종의 신주를 부묘하면서 世室로 결정하였다⁸⁰⁾.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15칸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宗	眞宗	正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6禰		

그림 37. 純祖 2년의 正宗 부모(종묘)

76) 『英祖實錄』 영조 1년 12월 25일 무자 條.

77) 『英祖實錄』 영조 48년 10월 22일 계미 條.

78) 『正祖實錄』 정조 즉위년 월 일. 한편 생부인 사도세자는 莊獻世子로 추존되었다가, 광무 3년(1899) 9월 1일에서야 莊宗대왕으로 추존되어 종묘 제13칸에 부묘되었다. 같은 해 12월 7일에는 莊祖라는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79) 『正祖實錄』 정조 2년 5월 2일 신유 條, 英宗과 貞聖王后의 신주는 제13실에, 眞宗과 孝純王后의 신주는 제14실에 부묘되었다.

80) 『純祖實錄』 순조 2년 8월 9일 정미 條. 正宗을 종묘 제15실에 부묘한 날 종묘와 영녕전에 합제사(禘祭)를 지냈으며 임금이 종묘와 영녕전을 참배하고 頒布한 敎文 가운데 “肆稱世室之彝章 庸副學國之顯望”라는 문구로 보아 이때 세실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憲宗代

憲宗은 純祖의 嫡長孫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종법상 정통성이 있었으나 생부인 孝明世子(1809~1830)를 왕으로 추존하여 종묘의 소목 차례를 완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즉위한 다음날로 조부의 廟號와 생부 효명세자에게 추송하여 올릴 묘호를 의논케 하여 각각 ‘純宗’과 ‘翼宗’으로 결정하였다⁸¹⁾. 이로부터 얼마 안가서 순종의 신주를 불천위로 정하기도 하였다⁸²⁾.

그런데 종묘의 신실이 한 칸도 비어 있지 않은 사정에서 순종과 익종의 신주를 동시에 부묘하기 위해서는 친진이 된 肅宗·景宗·英宗 등 3왕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숙종과 영종의 신주는 이미 불천위로 정해져 있었기에 경종의 신주만 조천할 수밖에 없었다⁸³⁾. 따라서 純宗까지 不遷位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四親의 神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칸의 신실을 증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⁸⁴⁾. 그리하여 종묘를 19칸 규모로 증건하여 순종을 제16실에, 익종을 제17실에 올려 모신 뒤 경종의 신주를 영녕전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영종 이하 각실의 신주를 옮겨 올려 모셨다⁸⁵⁾. 영녕전에도 경종 2년 이후 빈 신실이 없었으므로, 경종을 조천하기 위해서는 증건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영녕전은 좌우 협실 2칸씩 모두 4칸이 증건되어 신실 16칸 규모로 확장되었고 경종은 동협실 제3칸에 조천되었다⁸⁶⁾.

-
- 81) 『憲宗實錄』 순종 34년 11월 기묘 條, 경진 條. 한편 익종대왕으로 추송하여 신주에 글을 쓴 다음 문호 묘로부터 효화전으로 옮겨 모셨는데, 추송 이후에 인정전으로 돌아온 왕은 大赦令을 반포하고 추송한 경사와 세실에 모시는 경사와 관련하여 과거시험을 합쳐서 보이라고 지시하였다(『憲宗實錄』 헌종 1년 5월 19일 정축 條).
- 82) 돈녕부 영사 조만영이 순종을 不遷位로 정할 것을 처음으로 상소(『憲宗實錄』 순종 34년 12월 계사 條)하였으며, 대왕대비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해 초(『憲宗實錄』 헌종 1년 1월 13일 계유 條)에 순종을 世室에 높여 모시기로 결정한 사유를 종묘·영녕전·경모궁·문호묘에 고유하였다.
- 83) 肅宗과 英宗이 언제 不遷位로 지정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신주봉안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불천위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84) 먼저 宗廟增修都監이 개설되어 종묘의 각 실에 모셔져 있는 신주를 慶熙宮 光明殿과 長樂殿으로 移安하고 공사가 끝난 뒤 還安하는 절차를 맡아 보았다(『憲宗實錄』 헌종 2년 1월 10일 갑오 條, 3월 27일 경술 條).
- 85) 『憲宗實錄』 헌종 3년 1월 7일 을유 조, 경종의 신주를 먼저 조천하고 나서 새로운 신주를 부묘해야 마땅하나, 이날의 기사에는 새로운 신주를 먼저 16실과 17실에 모셔 놓고 나중에 경종을 영녕전으로 조천한 다음 영종 이하의 신주와 새 신주를 차례로 서쪽 신실로 천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남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1월 12일 기사에 16실과 17실의 축문을 읽은 관리에게 상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부묘와 조천의 순서를 위와 같이 진행했던 것은 분명하다.
- 86) 이 시기 종묘와 영녕전의 증건 과정은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憲宗 2年刊)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英宗	眞宗	正宗	純宗	翼宗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그림 38. 憲宗 2년의 純宗·翼宗 부모(19칸으로 증건된 종묘)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定宗	文宗	端宗	德宗	睿宗	仁宗	穆祖	翼祖	度祖	桓祖	明宗	元宗	景宗			

그림 39. 憲宗 2년의 景宗 조천(좌우익실 각 6칸으로 증건된 영녕전)

19) 哲宗代

哲宗은 先王인 憲宗에 대하여 친숙관계로 볼 때 숙부 항렬이었으므로 純祖에게 入繼하여 大統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는 그 시기 세도가인 안동 김씨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後嗣를 무리하게 끌어온 결과 일어난 중법의 파괴였다. 이러한 비정상적 왕위계승의 결과는 선왕을 종묘에 부묘할 때 축문에 쓸 칭호 문제로부터 조천할 신주의 代數 산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중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를 ‘辛亥祧遷禮訟’이라 하는 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례없는 정치적 분쟁을 동반하였다. 이 예송 과정에서 친진이 다하지 않은 진종을 조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영의정 權敦仁(1783~1859)과 金正喜(1786~1856) 일파는 숙청·유배된 결과 정치적으로 몰락하였는가 하면, 현종과 철종의 관계를 친숙관계로서의 姪叔 관계가 아니라, 君臣 관계·父子 관계로 보고 진종을 조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동 김씨 일파는 조정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친숙관계 즉 世次를 중요시하여 철종을 순조와는 부자지간으로 보고 익종과는 형제지간으로 볼 경우 선왕인 현종은 후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안동 김씨 일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역대 부모 과정에서 부자소목법을 따른 예가 한 번도 없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禮訟을 가장한 권력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⁸⁷⁾. 어쨌든 이 예송 결과 憲宗은 종묘 제16칸에 부묘되었고⁸⁸⁾, 眞宗은 영녕전 동협실 제4칸으로 조천되었으며⁸⁹⁾, 正宗 이하의 신주는 차례로 서쪽 방으로 遷奉되었다.

87) 李迎春, 「哲宗 初의 辛亥祧遷禮訟」, 『朝鮮時代史學報』, 조선시대사학회, 1997, 209~252쪽.

88) 『哲宗實錄』 철종 2년 8월 6일 경신 條.

89) 眞宗의 조천에 대해서는 현종 부묘일과 그 전의 실록 기사에서도 밝혀 적지 않고 있다.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英宗	正宗	純宗	翼宗	憲宗				

位次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世次											祖	父	兄弟	姪

그림 40. 哲宗 2년의 憲宗 부모(중묘)⁹⁰⁾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定宗	文宗	端宗	德宗	睿宗	仁宗	穆祖	翼祖	度祖	桓祖	明宗	元宗	景宗	眞宗		

그림 41. 哲宗 2년의 眞宗 조친(영녕전)

20) 高宗代

① 철종의 부모

철종을 부모할 때 世次로 보면 영종은 대수가 다하였으나 이미 불천위로 정해져 있었고, 位次로 보더라도 친진이 된 정종은 일찍이 불천위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친할 신주가 없었다. 그리하여 철종은 중묘 제17칸에 부모되었다⁹¹⁾.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東夾室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英宗	正宗	純宗	翼宗	憲宗	哲宗			

位次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禰
世次											祖	父	兄弟	叔

그림 42. 高宗 2년의 哲宗 부모(중묘)

90) 位次는 君臣關係의 義理를 중요시하여 형제 간에 계승했더라도 부자지간으로 보는 父子昭穆法의 용어이며, 世次는 親屬關係의 人情을 중요시하여 형제가 계승한 경우 一世로 보는 형제소목법의 용어이다.

91) 『高宗實錄』 고종 3년 2월 6일 條.

② 고종·순종대의 변화

哲宗 부묘 이후에도 종묘나 영녕전에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高宗 12년(1875)에는 翼宗이 불천위로 정해졌다. 또 고종 26년(1889)에는 英宗이라는 廟號를 英祖로 개정하였다. 또 이로부터 10년 뒤, 稱帝建元한 지 2년만인 광무 3년(1899)에는 11월 25일에 장헌세자를 莊宗으로 추존하여 종묘 제13칸 즉 영조와 정조의 사이에 부묘하고, 12월 7일에는 太祖·莊宗·正宗·純祖·翼宗의 皇帝廟號와 題號를 의논하였다. 또 12월 13일에는 종묘 각실 묘호 위의 6글자를 고쳐 썼으며, 12월 19일에는 太祖·莊祖·正祖·純祖·文祖를 소급하여 높이는 玉冊文과 인장을 올리고 이어 闕邱壇에 나아갔다⁹²⁾. 또 융희 2년(1908)에는 진종을 眞宗昭皇帝로 추존하였다. 그 결과 종묘 신실의 봉안 현황은 그림 43처럼 변화되었다. 位次로는 五廟制일 경우 정조와 장조가 친진으로 조천되어야 하나, 七廟制인 경우 6대조까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조천할 필요가 없었다.

太 室																				
西夾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東夾室
	太祖 高皇帝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英祖	莊祖 懿皇帝	正祖 宣皇帝	純祖 肅皇帝	文祖 翼皇帝	憲宗	哲宗		
位次	不 遷 位											2世	3世	高祖	曾祖	祖	稱			
世次	不 遷 位											高祖	曾祖	祖	父	兄弟	叔			

그림 43. 光武 3년 12월 19일 이후의 廟號와 신주 봉안(종묘)

世次로는 오묘제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친진이 된 신주는 영조의 신주로 일찍이 불천위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역시 조천할 신주는 없었다. 장조를 조천하지 않은 근거가 위차에 입각한 칠묘제인지, 세차에 의한 오묘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칭제 이후임을 감안할 때 ‘天子七廟’를 적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92) 이상의 내용은 『高宗實錄』 해당 일자 관련 기사 참조.

21) 高宗太皇帝의 祔廟

망국한 지 9년만인 1919년에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國葬日을 기하여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부터 만 2년 뒤인 1921년에 고종황제의 신주는 종묘에 부묘되었다. 이때 莊祖는 位次로 7代祖여서 七廟制라 하더라도 친진이 되었으므로 영녕전 동협실 제5칸으로 조천된 것으로 보인다. 또 世次로 할 경우 莊祖는 순종황제의 5대조여서 오묘제에서는 마땅히 조천해야 했을테지만, 칠묘제였다면 조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高宗皇帝를 부묘할 때 '位次에 의한 七廟制'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太 室																				
西夾室	1칸 太祖 高皇帝	2칸 太宗	3칸 世宗	4칸 世祖	5칸 成宗	6칸 中宗	7칸 宣祖	8칸 仁祖	9칸 孝宗	10 顯宗	11 肅宗	12 英宗	13 正祖 宣皇帝	14 純祖 肅皇帝	15 文祖 翼皇帝	16 憲宗 成皇帝	17 哲宗 章皇帝	18 高宗 太皇帝	19	東夾室
位次	不 遷 位											2 世	3 世	高 祖	曾 祖	祖	祔			
世次												高 祖	曾 祖	祖	父	祖	父			

그림 44. 1921년의 高宗太皇帝 부묘(종묘)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定宗	제2칸 文宗	제3칸 端宗	제4칸 德宗	제5칸 睿宗	제6칸 仁宗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제1칸 明宗	제2칸 元宗	제3칸 景宗	제4칸 眞宗	제5칸 莊祖	제6칸

그림 45. 1921년의 莊祖懿皇帝 조천(영녕전)

22) 純宗孝皇帝의 祔廟와 영친왕의 追祔

純宗은 1910년 망국과 함께 退位당한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다. 그는 1926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3년 거상 이후 즉 만 2년 뒤인 1928년에 종묘 제19칸에 부묘되었다. 이로써 현종 2년에 19칸으로 증건된 종묘의 신실은 모두 차게 되었으며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이후 더 이상의 증건은 없었다. 종묘는 1394년에 창건된 지 534년만에 그 역할을 멈추게 되었다.

1970년에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난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신주가 영녕전 동협실 제 6칸에 부묘되었으며 여기에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신주가 1989년에 追納되었다. 이로써 영녕전은 1421년에 창건된 지 568년만에 구실을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왕위계승의 상징이자 왕권의 정신적·물적 구심체였던 종묘건축은 더 이상의 생장을 멈추고 완성된 결정체로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묘는 조선왕조 유교 문화의 최대 기념비가 되었던 것이다.

① 純宗孝皇帝의 부묘

太 室																			東夾室	
西夾室	1칸 太祖 高皇帝	2칸 太宗	3칸 世宗	4칸 世祖	5칸 成宗	6칸 中宗	7칸 宣祖	8칸 仁祖	9칸 孝宗	10칸 顯宗	11칸 肅宗	12칸 英祖	13칸 正祖 宣皇帝	14칸 純祖 肅皇帝	15칸 文祖 翼皇帝	16칸 憲宗 成皇帝	17칸 哲宗 章皇帝	18칸 高宗 太皇帝		19칸 純宗 孝皇帝

位次	不 遷 位					2世	3世	高祖	曾祖	祖	祔
世次						5代	高祖	祖	曾祖	祖	父

그림 46. 1928년 純宗孝皇帝의 부묘(종묘)

② 懿愍皇太子 英親王의 부묘(1970년)

西夾室						四祖殿				東夾室					
제1칸 定宗	제2칸 文宗	제3칸 端宗	제4칸 德宗	제5칸 睿宗	제6칸 仁宗	제1칸 穆祖	제2칸 翼祖	제3칸 度祖	제4칸 桓祖	제1칸 明宗	제2칸 元宗	제3칸 景宗	제4칸 眞宗	제5칸 莊祖	제6칸 英親

그림 47. 1970년 皇太子 英親王의 부묘(영녕전)

IV. 宗廟建築의 力動的 아름다움

중묘건축 전체(圖 7)는 香大廳(圖 11·圖 12)·齋宮(圖 13)·宗廟·永寧殿등 4개 건물군과 악공청, 연못(圖 10)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건물군의 배치는 각각 幾何學的 構成에 의한 正面性과 對稱性을 바탕으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왕과 신하들로 이루어진 祭官들에게 제례를 통하여 先王들의 영혼을 엄숙하게 모셔야 한다는 다짐을 하도록 요구한다. 더구나 정적과 고요, 어두움과 침묵이라는 숨막힐 듯한 정적(제례 시간은 丑時) 속에서 진행된 부묘례는 기하학적 구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엄숙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祭享儀禮에는 흥겨운 제례악과 文舞·武舞 등의 춤이 동원되었다. 더구나 중요제례가 喪禮가 아닌 吉禮였기에 엄숙한 질서 속에서도 祭享行列의 움직임에 따라 視線과 場面の 변화를 배려한 역동적 구성이 요구되었다. 현존하는 중묘건축은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神主를 모시고 가운데 神路를 걸어가는 제관에게이든, 오른쪽(왼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왕(세자)에게이든 進路軸(圖 9) 위에서의 移動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의미있게 변화되어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이제 뚜렷하게 장면의 변화를 드러내는 지점을 의미있는 視點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묘건축에서 보이는 역동적 구성(圖 6)을 해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 정문(圖 8)의 중심부가 제1시점(V1)이 된다. 여기서 보면 4개의 건물군이 오른쪽 앞에서부터 왼쪽 뒤로 가면서 마치 부채살처럼 배치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물론 시야의 중심 각도에는 중묘가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앞의 향대청으로부터 차례차례 왼쪽 뒤의 건물군으로 옮겨간다. 눈길이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말이다. V1에서 보면 향대청의 북서 모서리와 재궁의 북동 모서리가 정확하게 포개져 보인다. 그리하여 재궁의 우측면과 정면이 모두 보인다. 즉 재궁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온전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배치되었다. 또 재궁의 북동 모서리와 뒷쪽 典祀廳의 북동 모서리가 완벽하게 포개지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V1에서 전사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재궁이 전사청을 완전히 가리도록 배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선을 좌측으로 옮겨보면 재궁의 남서 모서리와 중묘의 남동 모서리가 일직선상에 겹쳐 보이면서 중묘의 정면만 시야에 들어온다. 다시 왼쪽으로 시선을 주면 중묘의 남서 모서리 뒤로 영녕전 정면의 가장 오른쪽 담장 일부만 살짝 눈에 들어온다. 중묘와 별묘 사이의 제향상의 위계질서를 미묘하게 드러내주는 수법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V1에서 볼 때 모든 건물군은 일정한 각도 안에서 統合된 하나의 畫面을 이룬다. 그리하여 건물군 상호간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面の 重疊'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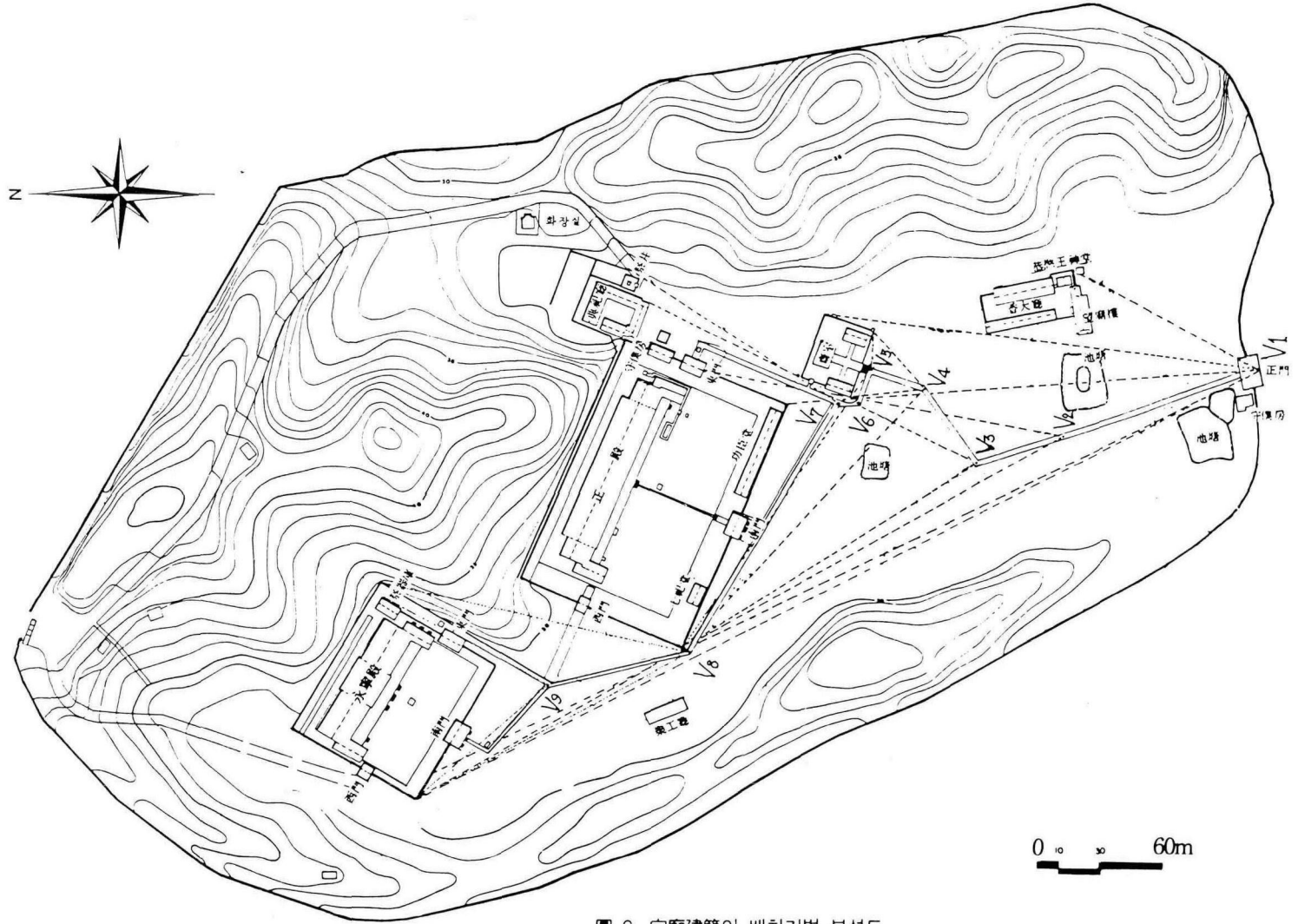


圖 6. 宗廟建築의 배치기법 분석도



圖 7. 종묘 원경 조감



圖 8. 종묘 정문



圖 9. 정문 안 神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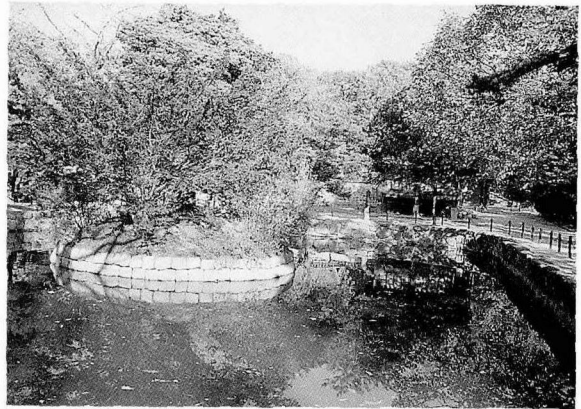


圖 10. 향대청 앞 池塘



圖 11. 望廟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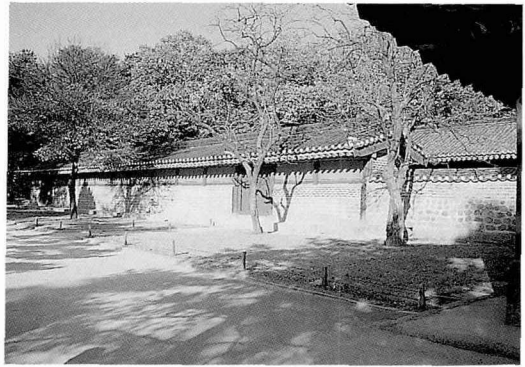


圖 12. 향대청



圖 13. V₄에서 본 齋宮



圖 14. V₅에서 宗묘쪽을 봄



圖 15. V₆에서 宗묘 남문을 봄

거리감이 배제되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말이다⁹³⁾.

둘째, 齋宮의 중심 구성축과 神路가 교차하는 지점은 제2시점(V2)이 된다. 재궁은 왕과 세자가 齋戒하면서 하룻밤을 묵는 장소여서 그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V1에서부터 신로 위를 따라 걷다가 처음으로 재궁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재궁 왼쪽을 보면 종묘의 우측면 일부(동문 일부 포함)와 정면 전체가 보이는 대신에 영녕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묘의 남서 담장 모서리와 영녕전의 남서 담장 모서리가 정확하게 重疊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영녕전은 실제로는 종묘의 서북쪽에 배치되어 있으나 V2에서 보면 종묘에 완전히 가리워져 마치 종묘의 뒤쪽이라도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V2에서는 재궁과 종묘(단 정면에 있는 공신당에 가려서 종묘는 동월랑 일부만 보임)만 視野에 들어오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왕이 재궁에서 재계하고 나서 종묘에서 親行하는 제의의 절차를 떠올리게 한다.

셋째, V2에서 신로를 따라 걷다가 길이 재궁 방향으로 꺾어지는 지점이 V3이다. 이 지점은 전사청의 중심축선 위이며, 동문 앞 神路와 같은 축선 위에 있다. 그러면 왜 V2에서 바로 재궁을 향하여 신로를 내지 않고 V3에 가서야 신로를 재궁쪽으로 틀은 것일까? V1이나 V2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사청·守僕房·東門 등이 V3에서는 재궁과 종묘 사이로 훤히 보인다. 왕을 포함한 모든 제관들이 종묘로 들어가는 입구인 동문이 여기서 잘 보인다는 것은 다음에 재궁 앞으로 난 꺾인 길로 갈 경우 보이지 않게 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암시하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그런데 V3에서는 높은 담장·功臣堂·南神門 등이 앞을 가려 종묘 본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넷째, V1이나 V2, V3가 모두 일직선 위에 놓인 시점이었다면, V3에서 꺾인 신로가 재궁의 중심축과 교차하는 지점은 V4가 된다. V4는 V2와 함께 재궁의 중심축 위에 있는 지점으로서 재궁에 근접해 있는 나머지 재궁이 종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시점이다(圖 13).

다섯째, V4에서 재궁을 향하여 걸어가 계단 앞에 다다른 지점이 V5(圖 14)이다. 여기는 재궁으로 들어가든지 오른쪽 신로를 따라가든지 할 수 있는 갈림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 앞쪽을 보면 재궁 서남 담장 모서리와 종묘 서남 담장 모서리가 중첩되어서 종묘는

93) 金光鉉, 「建築形態の重層的展開に關する研究」(日本: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82)에서는 일찍이 通度寺·昌德宮·演慶堂·石窟庵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배치기법을 분석하여 '面의 重合에 의한 建築形態의 重層的 展開'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 필자의 학부 시절 은사이기도 한 김선생님은 1981년 필자에게 종묘건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위 논문 30~34쪽에서는 '그리스 神殿의 不規則한 配置가 固定 視點으로부터의 퍼스펙티브적 關係로 秩序 지워져 있다'는 연구성과에 바탕을 두고, "固定 視點은 인간이 知覺하는 空間의 결정요인이 되며 非均質의 空間構成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을 끌어내어 우리나라 건축의 불규칙한 배치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圖 16. V₆에서 V₇을 봄



圖 17. V₇에서 종묘 동문과 전사청을 봄



圖 18. 종묘 동문



圖 19. 종묘 월대의 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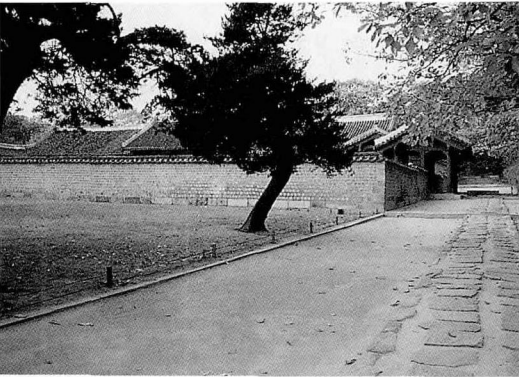


圖 20. V₉에서 본 영녕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V5에서 왼쪽 신로를 따라 한 걸음만 옮기면 종묘가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재궁 남서 모퉁이(V6)에 이르면 종묘와 전사청 일곽이 한눈에 들어 온다.

일곱째, V6에서 신로를 따라 몇 걸음 더 옮기면 종묘의 동문으로 난 길(圖 15)과 남문으로 난 길이 교차하는 지점(圖 16)에 이른다. 여기가 V7인데 여기서는 종묘 담장과 功臣堂의 남동 모서리가 가장 높고 우뚝하게 보이며 종묘 동쪽 담과 남쪽 담은 강한 투시적 효과를 보이면서 뒤로 물러나 보인다. V6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전사청 옆 祭井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圖 17) V7에서 신주나 香祝을 모신 관리는 종묘 남문으로 가고, 제관들은 모두 동문쪽(圖 18)으로 간다.

여덟째, V7에서 종묘 남문을 지나 종묘 남서쪽 담장 모서리에 이르면 V2 이후에는 모습을 감추고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영녕전이 확 트인 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전모를 드러낸다. 충격적 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圖 20).

종묘나 영녕전에서 진행되는 제의가 요구하는 정적 질서와는 달리, 정문(圖 21)에서부터 신주나 香祝을 모시고 禮服을 입고 神殿에 다다른 과정은 지극히 역동적이라는 점을 위에서 말한 9개의 視點이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종묘건축을 통괄하고 있는 질서는 두 가지 속성 즉 정적인 질서와 역동적 질서를 조화롭게 엮어 낸 한 차원 더 높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圖 21. 영녕전 정문

V. 맺음 말

종묘는 비단 全州李氏 帝王家の 사당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라는 현실 정치의 장에서 벌어지는 王權과 臣權의 관계를 神聖한 祭儀의 장 안에서 용해시키는 용광로와도 같은 것이었다. 종묘의 廟廷에 신하를 配享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모든 정치 활동은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라는 명분 아래 계획되고 실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묘에 신주를 들여모시는 과정(祔廟나 追崇 祔廟)이나 내모시는 과정(祧遷)에서 왕위계승의 정통성 여부가 갈등의 핵으로 등장하여 정치 활동을 파국과 난조

로 돌아가는 기폭제가 된 적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 廟制와 神主奉安法에 대한 異見으로 발생한 논쟁으로 조선전기에는 주로 기층세력(勳戚·大臣·政丞 등)과 신진세력(禮官·言官·儒臣·士林 등)간의 대립이 초래되었고, 禮學의 수준이 높아진 조선 중·후기에는 政派간의 이해와 결부되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는 갈등 표출의 장이었다기보다는 왕과 집권 신료들의 정신적 구심체이자 신성한 제의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자기 정화의 장이었다. 그러기에 궁궐건축이 팽창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데 반하여 종묘건축은 엄숙·장중하면서도 단아하게 지어졌던 것이다.

時王은 즉위 후 만 2년 동안 현실 정치의 집행자로서보다는 喪主로서 예의와 효성을 다하여 돌아가신 선왕에 대한 제사에 전념해야 했다. 居喪이 끝나고 耐祭(耐廟禮)를 거행한 날로부터 비로서 왕은 현실 정치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밤새워 부제를 지내고 새벽에 궁중으로 돌아와서는 곧 첫 政事로서 大赦令을 내리고, 대비나 왕대비께 尊號를 올리며, 인재 등용을 위한 첫 과거를 보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었다. 부제를 지내고 나서부터 시왕은 부왕을 잃은 슬픔을 접어 두고 나라일을 살피는 데 평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선왕의 신주를 부묘하면서 지내는 부제야말로 종묘라는 조상신전에서 거행된 그 어느 제례보다도 의미심장한 儀式이었다. 부묘를 앞두고 시왕과 그 신하들에 의하여 祧遷位와 不遷位가 결정되었고, 이 결정에 따라 祧廟와 宗廟의 증건 여부가 정해졌다. 조선전기에는 '創建 宗廟'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불천위가 적었던 데 힘입어 증건이 크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명종 때에 이르러 종묘를 11실로 증건하면서부터 증건이 거듭되어 광해군대에 영녕전, 영조대에 종묘, 현종대에 영녕전, 현종대에 종묘와 영녕전이 증건되었다. 이렇듯 잦은 증건은 물론 불천위의 증가 때문이었다. 조선후기에 등극한 13왕 가운데 현종·철종·고종 등 3왕은 왕위계승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또 순종은 망국으로 인하여 불천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나머지 광해군부터 순조까지의 9왕 가운데 불천위로 정해지지 않은 왕은 광해군과 경종 두 왕뿐이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경종은 재위 4년 2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후기에는 거의 모든 왕이 後王에 의하여 불천위로 정해졌음이 분명해진다.

증건을 위해서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두 임시로 옮겨내고 다시 들여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移安祭나 還安祭와 같은 安神祭가 거행되었다. 모든 절차에 조상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동반되었던 것이다. 祭儀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례악과 춤이 공연되고 여기에 맞추어 제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예법과 절도에 맞는 동작이 요구되었다. 종묘건축은 그러한 제의가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되어야

할 엄숙한 신전이였다.

그러나 종묘건축에서 보이는 두 가지 질서의 미묘한 결합이 성공적인 것이었듯이, 禮學의 토대 위에서 宗法에 의한 왕위계승과 禮法에 맞는 廟制를 고집했던 臣權과 현실 정치와 血緣의 情理를 내세워 先王의 제도를 고수하려 했던 왕권의 관계는 종묘건축에서 조화롭게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조선왕조는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518년 동안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고 종묘건축도 유례없이 장중하고 영속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일찍이 종묘의 문화사적 가치를 깨달은 우리 정부는 종묘 영역을 사적 제125호, 종묘 건물을 국보 제227호, 영녕전을 보물 제821호, 종묘제례악(圖 22)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종묘가 1995년 12월 9일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대장경판고 등 불교문화유산과 함께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선정됨으로써 종묘의 문화적 가치는 세계적인 것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종묘의 무궁한 가치는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종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앞당기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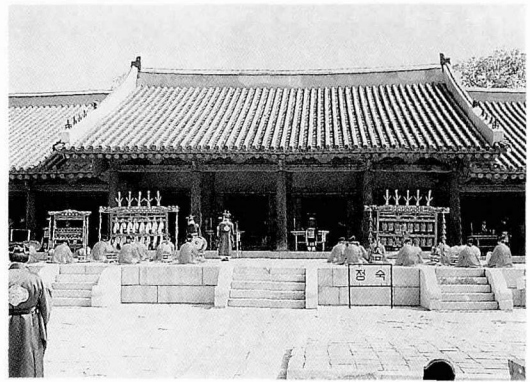


圖 22. 종묘 영녕전 제향시 제례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

[ABSTRACT]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of Choson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Lee, Kang-geun

This study examines Chongmyo (宗廟), the Royal Ancestral Shrine of the Choson dynasty, focusing on the question why the Main hall (宗廟) and the Hall for Everlasting Peace (永寧殿) consequently extended lengthwise. In the process, the enshrinement of the spirit tablets (祔廟) will be considered as a key to the solution of this ques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irstly in elucidating the architectural program of the two buildings, and secondly in clarifying the principle of layout of the Chongmyo complex.

The main function of Chongmyo is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royal ancestors. For the royal family and all th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e ritual system (禮制) was accepted as a standard for their value and behavior. But the conflicts between ordinary Family Rites (家禮) and the Rites of Royal family (王家禮) emerged in applying the former for the royal rites. The mode of enshrinement and displacement (祧遷) of the spirit tablet of the deceased king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legitimacy of the royal succession to throne.

Now the Main Hall has a memorial hall with nineteen rooms, and the Hall for Ever-lasting Peace has a memorial hall with sixteen rooms. The two buildings were continuously extended lengthwise during the next 500 years, for two principle reasons. First, there was a need for the addition of rooms for enshrinement (Sinsil 神室) due to the increase of the spirit tablets of the deceased kings and queens. Second, Sesil (世室) which enshrined non-movable spirit tablets (不遷位) were added in the Main Hall. So the total number of rooms consequently increased from seven to nineteen in the Main Hall, from four to sixteen in the Hall for Ever-lasting Peace.

The rite of enshrinement of spirit tablets (祔廟儀禮) that was performed during midnight from one to three o'clock(丑時) was one of the most majestic court rites of the Choson dynasty. Nowadays only the ancestor-memorial services are performed in each season of the year (時祭) in the forenoon of the first sunday of May every year. The latter is authorized as a cultural property by the government.

Chongmyo architecturally consists of the Main Hall, the Hall for Meritorious Officials (功臣堂), the Hall for Everlasting Peace, a royal pavilion where the kings prepared themselves for the performance of rites (御齋室), a waiting room for officiants of the rites (香臺廳), a storage for incense and vessels(祭器庫) and a waiting room for musicians (樂工廳), ponds.

Two principles governed the overall layout of the Chongmyo complex. First, each one of four building groups has a geometrical composition with frontality and symmetry. Second, all buildings are organized so that the visible form of Chongmyo architecture that has irregular layout are related to the perspective overlapping of perpendicular to the line of movement. So the irregular layout and facade shapes were not the result of natural conditions, but were consequences of the constant development of superimposed structures. At the higher level the synthesis of two orders, i.e., geometrical and perceptual ones, was achieved remarkably successful way.